

인권정보자료실  
NSL1.70

사방방에 드립니다!

'국가보안법 다시 보기'  
자료 뮤음 II

.....

.....

대학생 인권연대(준)

42대 서울대 총학생회 인권위원회

인권정보자료실  
NSL1.70

**'국가보안법 다시 보기'**

**자료 목음 II**

.....

.....

대학생 인권연대(준)

42대 서울대 총학생회 인권위원회

# 차례

국가보안법다시보기 국가보안법다시보기 국가보안법다시보기 국가보안법다시보기

## 3 → 자료집을 보시기 전에(대학생 인권연대)

### 1부/ 국가보안법의 역사

- 8 → 국가보안법 탄생의 비밀(서울법대 인권동아리 사람세상)
- 12 → 국가보안법 50년, 그 인권유린의 자취(서울법대 편집동아리 FIDES)
- 17 →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박홍규, 영남대 교수)

### 2부/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하는 이유

- 25 → 국가보안법 조항분석(서울공대 동아리 사회철학연구회)
- 33 → 국가보안법의 정치경제학(이창수, 청년진보당 인권위원장)
- 37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3부/ 김대중 정권 1년, 국가보안법 현황

- 40 김대중 정권 1년,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43 최근 주요 공안사건 현황(서울법대 동아리 법사회학회)
- 52 준법서약서와 전향서(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 61 보안관찰법에 대해(전북평화와인권연대)

## ◎ 자료집을 보시기 전에

### ● 자료집의 발간 목적은

『국가보안법 바로 알기』 자료집은 98년 서울대 평화인권위원회에서 양심수 석방 운동을 위해 만들었던 「국가보안법 자료 묶음」 자료집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에 가장 좋은 99년을 맞아 각 단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래 이 자료집은 서울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실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중 토론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대학생 인권 연대” 명의로 펴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그 자체가 인권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생 인권 연대”는 99년 상반기를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번 투쟁을 계기로 인권 운동의 새 시작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인권 정책에 대응하고 사안에 끌려 다니는 인권 운동, 피해자 중심의 인권 운동을 넘어 공세적이고 진보적인 인권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절실힘을 갖고 2000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없애 버립시다.

김대중 정권의 특별 정책으로 국가보안법은 곧 운명을 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북한 시장에 눈을 돌리는 남한 자본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남한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우리 손으로 이루어 내어야겠습니다.

### ● 글의 출처

“국가보안법 탄생의 비밀”은 서울법대 인권동아리 ‘사람세상’에서, “국가보안법 50년, 그 인권유린의 자취”는 서울법대 편집부 동아리 ‘FIDES’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연구2(박원순, 역사비평사)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변론 창간호(역사비평사) 및 98년 서울대 평화인권위의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라는 글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1995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해방분단 50년 기념으로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박홍규 영남대 교수께서 “개발독재와 인권-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일부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법 자체로 보지 않고 국

가안보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몇 년 지난 글이지만 일부를 실었습니다. 서울대 총학 인권위에서 타이핑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분석”은 서울공대 동아리 ‘사회철학연구회’에서 정리한 글로 98년 자료집에 실린 내용을 일부 고쳐서 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문은 통신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신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정치경제학”은 청년진보당 인권위원장으로 계신 이창수 선배님께서 본 자료집을 위해 기고해 주신 글입니다. 시기가 지난 글이지만 96년 12월 14일 민변, 민교협 등의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규 교수(인하대)께서 발제하신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정치/경제/사회/문화)”이라는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우누리 찬우물 자료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이신 서준식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일부 인용하였고 “김대중 정권 1년,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는 역시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무국장이신 박래근 선배께서 99년 2월 23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신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최근 주요 공안사건 현황”은 서울법대 동아리 법사회학회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양심수 현황은 민가협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준법서약서와 전향서”는 98년 8월 준법서약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원순 변호사께서 발제하신 글을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상의 자유에 대한 글은 국가보안법 연구3(박원순, 역사비평사)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안관찰법에 대하여”라는 글은 전북 평화와인권연대의 자료집 글 중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신 여러 동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원순 변호사님, 박홍규 교수님, 서준식 선생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글을 무단 발췌하게 되었지만 이 자료집이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 유의해야 할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의 관점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역사가 오래 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 벌여내는가에는 운동 주체들의 세계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지만 “대학생 인권 연대”는 본 자료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 1)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인권의 관점에 기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전개되어온 역사를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일 운동과 함께 전개되어 온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진행된 경향입니다. 물론 두 가지의 경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8월의 통일 운동의 열기와 함께 타올랐다가 다시 식어버리는 운동, 조직 사건이 터지면 즉자적 분노를 모아냈던 운동이었고 결국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은 항상 산위로 굴려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지프스의 공과 같았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그 자체가 정치적 운동이지만 인권의 관점에 기반해서 전개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인권은 정치정세의 변화나 이데올로기 공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중적 설득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 2)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법체계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99년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를 두고 인권 단체들은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법 조항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보다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제반 국가기구들이 계급 역 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사상의 자유 확보 등 근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대체 입법 되더라도 계급 역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그 법은 여전히 학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멸되더라도 대체된 형법이 여전히 양심수를 양산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 3)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민주질서수호법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법무부와 여권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소조항이 남아있는 민주질서수호법은 국가보안법과 하등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국가보안법은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적, 지배 계급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주질서수호법이 여전히 모호한 조항을 통해 노동 운동, 학생 운동을 포함하는 진보 운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이름만 바꾼 채 과거 국가보안법의 주 역할을 대신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 4)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투쟁과 대별되는 투쟁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전체 운동 진영의 공통 과제이며 독립적인 운동 과제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의 이해와 맞물려 있고 실제 국가보안법의 적용 역시 그러합니다. 남한 사회에 막 싹을 내리고 있는 진보정당 운동이 탄압을 받는 상황이나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국가안보이데올로기로 탄압을 받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정치경제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5) 학생운동다운 실천을 벌여 내어야 한다

학생 운동이 인권 운동 단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인권 운동 단체들은 전문성이 힘이지만 학생 운동은 대중성과 선도성이 힘입니다. 학생 운동다운 방식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벌여내도록 합시다.

## ● 이 자료집을 읽고 함께 토론한 후

###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1) 학생회를 통해 대중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읽은 당신이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학생회를 통해 대중 사업을 전개합시다. 노동 시간 단축 등 99년에서의 핵심 정세와 함께 대중적으로 교양 및 토론을 진행하고 학생회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전개합시다.

#### 2) 대학생 실천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학생 실천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각 단위 상황에 맞게 실천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선봉대 질서보다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운영을 통해 학내/외 선전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자보를 만들어 붙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자보를 손으로 만들어 학내에 계속 붙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4) 대시민 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학내 선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대시민 선전을 진행합시다.

#### 5) 목요집회에 참가합니다.

민가협은 매주 목요일 2시 탑골 공원에서 목요집회를 합니다. 선후배들이 함께 목요집회에 가서 국가보안법이 실제 적용되는 상황을 직접 들어 봅시다. 그리고 주변에 양심수가 있으면 석방 운동을 전개합시다.

#### 6) 법무부 장관, 대통령에게 항의 편지를 보냅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철폐를 호소하는 항의 편지를 보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편지 오는게 귀찮아서라도 정부 당국이 다시 한 번 국가보안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해 줍시다.

## ● 대학생 인권 연대에 대해서

대학생 인권 연대는 서울지역의 몇몇 대학에서 인권 운동을 하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의 인권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이 처음 사업인만큼 아직 축적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의 전문성 및 사안 대응, 피해자 중심의 운동을 넘어 학생운동의 대중성, 선도성을 통해 공세적이고 대중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인권 운동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대학생 인권 연대에 대해, 또는 자료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성균관대 총학생회(명륜)로 연락주십시오.

1999년 4월 초

## 국가보안법 탄생의 비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이렇게 성급하게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여순사건<sup>1)</sup>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국회입법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제헌국회는 국회 본연의 목적인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보다는 국가의 과격을 세우는 데에 따른 행정부와의 협조적·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제정반대론을 펼쳤던 일부 소장과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소장과 의원들의 우려는 지난 50여년간 한국 정치사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세력들에 대한 억압을 위해 제정·운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데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의 상당부분의 조문들이 치안유지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반민주성의 강화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은 법문상으로 뿐만 아니라 법운용상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이러한 속성은 이승만 정권의 뒤를 이었던 정권에서도 역시 달라지지 않고 반공, 반통일, 반민주적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제정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제정배경, 내용에 대한 검토는 오늘의 국가보안법의 내용, 운용에 관해 많은 시사와 참고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1.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 1)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정과 그 성격

8·15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8·15

1) 여순사건이 당시 정국에 끼친 영향과 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자세히 후술할 것이다.

는 민족의 분열과 분단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해방과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는 친일세력의 척결과 식민지시대의 유제인 반봉건적 지주·소작제 철폐 등을 통한 민족 경제의 건설이라는 근대화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8·15 당시의 국제적·국내적 한계상황 속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나아가 미소 양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전국의 주체로 예정되어 있던 항일운동 세력들은 이념적·지역적으로 크게 분열되었다. 8·15 이후 정치적 공백상태에서 남한에서는 수많은 정당·사회단체가 난립하였는데, 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네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우익진영으로서 한민당을 결성한 세력들이고, 둘째는 안재홍, 김규식 등의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으로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흡수한 중도우익세력, 셋째는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결성하여 주도권을 장악한 여운형 중심의 중도좌익세력, 넷째는 건준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한 조선공산당 중심의 좌익세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통치의 편의를 위하여 식민지 관료체제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친미, 친일적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군정을 구성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좌익세력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하고 그 조직적 기반을 이용하여 10월 폭동, 4·3봉기, 여순사건 등을 주도하였으나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에 실패하고 만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정세가 냉전체제로 재편되고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기에 이르러, 이승만은 미군정의 이해와 우익세력의 결집을 위해 1946년 6월 3일 마침내 남한단독 정부수립론(이하 단정론)을 주장하게 된다.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은 좌익세력의 반대와 저항, 그리고 중도좌파의 불참 속에서 남한만의 5·10 총선을 실시하여고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정부수립이 이어졌다.

이렇게 탄생한 단정은 그 성립과정과 배경이 여실히 반영되어 반공정권으로서의 성격과 반통일적 성격, 친일 지주, 자본가 중심의 반민중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들은 좌익세력과의 투쟁을 위해 “친일과 숙청 주장은 공산당을 이름내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까지 하게 된다. 특히 단정의 권력유지기반인 군대와 경찰조직에서도 우익이 세력을 독점함으로써 반공정책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단정이 통일지향적 세력들을 배제한 가운데 성립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북한과의 대립과 비난을 전제로하여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의 영토조항, 국회의석의 북한 지역의 지분유보 등의 논리<sup>2)</sup>가 정당화되었고, 북진통일만이 이승만 정권의 공식적인 통일논리로 부각되게 된다. 또한, 이승만 정권은 일제청산을 위한 민족반역자의 재산 몰수, 완벽한 농지개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몰아세워 잠재웠다.

#### 2)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위에서 본 단정의 성격과 지향은 그것에 배치되는 세력에 대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탄압과 제거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단정은 군대와 경찰력을 통한 좌익세력 탄압과 더불어 법적 강제의 형태로서 반통일, 반민중적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하는 반공이데올로기는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일반

2) 이에 대한 서술은 국가보안법의 각 조항에 대한 간략한 검토 부분에서 다루어 질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의 다른 글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국민의 사상과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배경 외에 국가보안법 제정의 현실적이고 급박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사건이었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때까지 잔존하고 있던 좌익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섬멸할 법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밤 9시를 기하여 일어난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반란행위는 불과 4시간 만에 여수 시내의 각경찰서와 파출소, 군청 등 주요기관의 접수로 확대되었고, 20일에는 순천이, 그 이후에는 곡성, 구례, 보성, 광양 등이 반란군의 영향권 내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반란사태는 제주도 4·3 봉기의 진압을 위해 출동명령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제14연대 내의 좌익세력이 그 당시 닥쳐오고 있던 국군의 움직임에 위기를 느껴 거사를 도모했던 것이다. 점령지역 안에 인민위원회의 설치 등 행정 기능까지 담당하였던 반란군은 그 달 27일 경까지는 정부의 진압군에 의하여 완전히 패퇴당하여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게 된다. 이렇게 막을 내린 여순사건의 배경에는 해방 후 건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던 좌익세력, 제주출동 반대라는 민족적 감정과 경찰에 대한 증오감 등의 상승작용이 있었다.

여순사건 이후,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의 오대산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잇따라 민심이 극도로 흥흉해진 상황에서 국회는 즉각적으로 '내란행위특별조치법' 기초의 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 자신도 내란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나아가 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을 위한 국가보안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다.

## 2.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되는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 최초로 발의된 것은 여순사건 이전인 그 해 9월 20일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내란행위 처벌에 중점이 주어졌던 것으로서 나중에 여순사건 직후 제정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는 내란행위 그 자체보다는 내란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어 갔다. 이것은 내란행위는 그 당시까지 적용되고 있던 구형법 상의 내란죄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순사건 이후 구체적인 입법행위로 표출되지 않는 남로당 외곽조직 이외의 합법적 형태의 좌익결사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시킬 필요성 때문이었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은 국가보안법으로 수정된 채 1948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 초안에 대해 많은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까지도 법률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기 논쟁이 제기되었으나, 폐기동의안은 37대 69로 부결되고 만다. 나아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1조 삭제를 주장하는 수정동의안마저 부결되고 만다. 마침내 국가보안법은 일부조항의 자구수정만이 이루어진채 같은 해 11월 20일 접수되고,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되어 시행된다.

## 3.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이렇게 졸속으로 입법절차를 거친 제정국가보안법은 다음의 네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고, 이는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권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다.

첫째로는 국가보안법이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와 다를 것이 없다. 위 조항들은 모두 치안유지법과 제정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치안유지법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로, 제정 국가보안법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으로 확대되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참칭'과 '국가변란'의 개념은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사상탄압법으로서의 성격이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의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국가보안법이 예비검색의 도구로 활용될 여지를 남겨 국민의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분단의 법제화 가능이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상태를 기성사실화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는 논리나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전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일을 위한 대화 파트너가 아닌,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한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분단상태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 50년, 그 인권 유린의 자취

### 1. 진보당 사건

#### 1) 누구를 위한 칼날인가, 누구를 겨눈 칼날인가.

1958년 1월 11일 밤 경찰은 돌연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부위원장 박기출, 김달호, 간사장 윤길중 등 간부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색하고 전국 각 지구당에서 당원명부를 압수하는 등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진보당은 사실상의 와해사태를 맞고 말았다. 이어 경찰은 2월 8일 1차로 수뇌간부 9명을 간첩죄, 간첩방조죄,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추후 14명 추가기소) 그리고 재판도 시작하기 전인 1958년 2월 25일, 미군정청 법령 제55호에 의거하여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당시 조봉암 선생

1959년 2월 16일 확정판결에서 조봉암, 양이섭에게 2심대로 사형을 확정하였고, 피고들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다음날인 7월 31일 비밀리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2인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 2) 이승만 정권이 이토록 서둘러 조봉암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진보당은 법원의 선고이유대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불온한 조직'이었는가?

당시 진보당은 사사오입헌법 제정이라는 극단적인 치부까지 드러낸 이승만정권을 유지해나가는 데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창당한지 1년에 불과한 진보당과 조봉암은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어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얻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의 야당이었던 민주당 역시 이 새로운 혁신정당을 견제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승만은 '국가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날이 선 칼날을 진보당에 들이댈 수 있었다.

#### 3) 당시의 진보당 등록취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진보당은 대한민국과 유엔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 괴뢰집단과 소련 및 중공이 주장하고 있는 적성국가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감시단의 감시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으로 선언하

고 있다.

2. 진보당 간부들은 북한 괴뢰집단이 밀파한 간첩과 밀사와 파괴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진보당은 그들의 목적달성을 전제 단계로 공산당 비밀당원과 공산당 방조자들을 의회의원에 당선시키고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기도해왔다.

#### 4) 그렇다면 진보당은 실제로 무엇을 지향하는 집단이었는가?

다음은 1955년 12월 22일 발표된 진보당 발기취지문의 주요내용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생취의 역사적 성업인 삼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환기 계승하며, 우리가 당면한 민주수호와 조국통일의 양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신당을 조직하고자 이에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정치, 자본가적 특권경제를 쇄신하고 진정한 민주책임정치와 대중 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

#### 5) 여기에서 '대한민국 파괴의 음모'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형장에서 마지막 남긴 조봉암의 유언은 진보당사건이, 정당성 없는 부패한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음모였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은 것은 바로 이승만정권이었다.

### 2. 인민혁명당 사건

#### 1) 숨겨진 진실, 피맺힌 죽음

박정희 독재체제의 전반기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시대요, 후반기는 유신치하의 긴급조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후반기에도, 긴급조치로 억누르기엔 무리가 따르거나 반공이데올로기의 '빨갱이' 캠페인으로 위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혹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숨길 수 없어 곤란한 경우에 반공법과 보안법은 여지없이 그 정체를 드러내곤 하였다. 그 시대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는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박정희 독재권력이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씩이나 희생이 되어야만 했다. 특히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특별한 증거나 혐의 없이 여러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인권유린의 사건이었다.

1975년 4월 8일 39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4시간도 채 못되어 8명이 처형되었다. 이 8명은 소위 인혁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황산덕 장관이 밝힌 인혁당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자.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은 그후 거의 지하에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 소요와 유류파동, 개헌청원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제2의 사일구로 사회혼란을 조성,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들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겸거된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을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갖가지 죄명이 붙여진 채 기소되었다. 인혁당 관련자 21명에 대한 세 번의 재판을 거쳐,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7명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1975년 4월 9일 위 7명과 학원관계자 여정남 이렇게 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 2) 그렇다면 인혁당 재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공안당국의 발표는 여러가지 면에서 허구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혁당 관련자들은 5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대체로 자택에서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인혁당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고도 피신하지 않았으며, 공안당국이 말하는 '치밀한 조직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인혁당 또는 인혁당 재건이라는 말은 법정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을 정도였고 피고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것이며 인혁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혁당 간부 또는 인혁당 당원으로 둔갑하였다. 또 이들과 접선했다는 간첩 김상한에 대해서 도예종씨는 "김상한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만난 사실도 없고 우홍선으로부터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당국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증거나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이 그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소위 관련자를 사형에 처해야 했던 것은 당시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2호를 발동하고 연이어 4호를 발동하였다. 그해 8월 15일에는 재일한국인 2세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제적으로도 60년대 이후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는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고, 대 중국 외교성립 및 낙순 독트린과 75년 베트남전 패배를 계기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지배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리마에서 개최된 당시 비동맹국 외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국내적으로 가혹한 탄압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특히 인혁당재건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을 반공법, 국가



당시 이수병 선생

보안법, 긴급조치 4호로 완전히 붉은 물로 채색해버리기 위해서 그 배후조종 세력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박정권은 국가전복을 기도하려는 폭력혁명의 실행집단으로서의 민청학련, 해외 공산기지의 지원자로서의 일본인 기자, 전 대통령 윤보선까지를 포괄하는 대야를 배후 조종 지원세력으로 하여 북한과 직접 연관도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인혁당이라고 하는 거대구조물을 만들어냈다.

인혁당 사건의 재판은 '정찰제 사형판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8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사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처형되었고 시체마저 내어주지 않았다. 특히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했던 여성 남씨는 정보기관에 의해 가장 잔혹하게 파멸되었던 사람이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조작이 필요했으므로 그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았고 시체마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화장되었다. 그를 석방시켜주거나 면회를 시켜주면 자신들의 잔학성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 3.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 1) 깨어있는 젊음, 어둠에 갇히다

1985년 봄은 격동의 시기였다. 2.12 총선에서 폭발적인 민중의 지지를 얻은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여 전두환 철권통치체제의 한쪽에 균열을 내고 있었고 학생운동에서는 80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 연대조직인 전학련, 삼민투가 조직되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친미적인 민간보수정권의 수립을 통한 안정적 체제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타임>, <뉴스위크> 등을 이용해 은근히 '한국의 민주화'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이에 전정권은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다. 민중들의 투쟁을 잠재우고 다시금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 그것은 바로 역대독재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던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였다.

1985년 9월 9일 각 언론에서는 안기부가 제공한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수사발표문'을 사건 그림표와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성만은 지난 1982년 8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유학 중, 재미반정부 지로 위장한 <해외한민보>의 발행인이며 북괴공작으로 평양을 수차례 다녀온 서정균에게 포섭되었다. 김은 1983년 7월 형가리 주재 북괴공관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미국 등 우익세력을 제국주의적 민족반역집단으로, 반공을 민족분열을 책동하는 냉전논리로 매도하는 내용의 반미 팜플렛 <예속과 함성> 300권을 제작하고..."

양동화의 입북, 김성만의 형가리 동독 방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당국은 이를 학생운동탄압을 위한 절호의 소재로 생각하여 수사에 착수한 후, 이들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 간첩단사건으로 발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학생운동이 간첩에 의해 조종된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학생운동 전반을 불신케하려는 의도였다.

### 2)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김성만씨는 '공산주의 서적 탐독', '<예속과 함성>'이라는 소책자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

찰은 “1978년 5월경부터 청계천 고서점 일대에서 구입한 <변증법적 유물론>, <공산주의 운동사> 등 공산주의 관련서적을 탐독하여...”라고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어떤 서적을 읽고 그 서적에 담긴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말 그대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최상의 미덕으로 하는 제도 아래에서 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어떠한 사상이나 신념체계를 가지는 것은 자유이어야 하고 이 자유에 기초하여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단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상황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작 김성만씨 자신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봉건적 유제를 일소하고 독재를 청산하여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에서 이들이 탐지 수집했다는 기밀 역시 <예속과 합성>, <인식과 전략>, <야학비판> 등 단순한 운동권 문서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벌였다는 활동 역시 당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반미의식 정도에 기반한 것이었다. 결국 “민주주의”를 “민주주의”的 이름으로 탄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연행된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씨 등은 안기부 지하실에서 60여일간 감금, 고문조사를 받는 동안 일체의 진실이 무시된 채 안기부가 필요로 하는 인물로 둔갑되어 버리고 북한을 추종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무력폭동을 계획한 관계간첩단 사건의 주요관련자가 되었다. 조작을 위해 자행된 고문으로 그들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김성만씨는 ‘항소이유서’에서 “...모진 고문을 참아내느라고 아랫입술을 깨물어 입술이 모두 해진 상태에서 안기부의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혹독한 고문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의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본인이 부모님께 보내는 유서마저 써놓고 조사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무시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 그 때 인권은 없었다.

##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인권

■박홍규 (영남대 교수, 노동법)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부는 독립 후 지금까지 인권보장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소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이데올로기하의 정권유지와 경제개발을 이유로 하여, 또한 그것과 연관되는 강대국의 직·간접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국가의 독재적 및 권위주의적 성격이 조장되어 인권이 침해되어 왔다.

이 글에서 그러한 국가형태를 군사독재정치와 재벌독점경제의 소수지배연합에 의한 ‘개발독재’(development dictatorship)라고 한다. 최근에 와서 군사독재체제는 민간엘리트정부로 이양되기도 하나, 전통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는 식민지 시대로부터 군사독재를 경험했고, 그것은 과도한 군사화와 일상의 군사문화를 결과했으므로 민간정부라고 하여도 여전히 군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독재적인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독재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시아 신홍공업국에 확산되고 있는 개발독재의 모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국가안보이데올로기가 국가보안법 등을 매개로 하여 정치·경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어 그 중요한 보기로써 한국의 경우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강대국에 의한 군사 및 정치적인 간섭 또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탄압도 당연히 관련된다.

이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먼저 광의의 그것은 1993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법의 이름에 관계없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 및 제도’를 모두 의미하며 그런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특별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포함한다. 그리고 협의의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나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과 같이 명확하게 국가안보라는 목적하에 제정된 정치적 입법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의 그것은 종래 협소하게 정치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국가안보 또는 국가보안법의 개념을 말하나, 그것과는 달리, 광의의 국가안보란 사회질서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개념까지 포함하는 인권제한의 기본법리로 이해되며, 따라서 광의의 국가보안법이란 협의의 반체제 내지 반정부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모든 법체계를 당연히 포함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국가안보 내지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은 인권침해의 양상이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 두 가지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개발독재' 모델과 인권

'개발독재' 모델은 주로 1970년대의 한국(당시의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이 글에서는 '박정희 모델'이라고 부른다)과 대만 및 싱가폴 등에서 확립되었고 다시 1990년대 이후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결과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하여 신홍공업국(NIEs)이라고 불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한 발전 모델이 아시아지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60년대까지 인권은 주로 빈곤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장애요소가 제거되면 서구와 같이 확보되리라고 보는 낙관주의가 지배하기도 했고, 지금도 인권보다 경제가 우선한다는 정치논리의 현실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나, 7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실이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소수독점재벌에 의한 것이고 독재정부는 그것과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권이 탄압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그러한 낙관주의나 현실주의는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 도리어 그러한 성격의 경제성장과 함께 인권침해, 특히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더욱 교묘하게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경제성장 자체가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는 구호로 악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그것이 국제화 또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국가안보를 지상의 과제로 삼은 지난날의 냉전체제가 국제적으로 종언을 고하고, 아시아 각국에서도 상당 정도로 민주화가 지속되어 더 이상 개발독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종래의 미·소 대립을 축으로 한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등 여러 강대국까지 아시아의 인권보장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여러 나라가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장식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되듯이 최근 유엔은 국가간의 안전보장만이 아닌 국가 속의 인간안전보장(human security), 곧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새로운 핵심용어로 사용하여, 1945년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한 인권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대세와 무관하게 개발독재가 더욱 확대,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민주화의 요구, 특히 1987년의 6월항쟁 이후 제 6공화국이 민주정권을 자칭하고 그것에 뒤이어 성립한 김영삼정권이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많은 협약을 가하여 배척, 탄압하고 있다. 그 결과 고도로 억압적이었던 제 5공화국보다 더 많은 정치범, 시국사범들이 구속되고 처벌되며 노사분규를 더욱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사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안전기획부법, 각종 선거법 등의 정치악법에 의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탄압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노동악법에 의한 경제적 민주주의의 탄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곧 제 1차적으로 비민주적 악법장치의 온존 하에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민주화를 자칭하면서 그러한 악법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정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주장되고 있는 민주화란 사회(통일운동을 포함하는) 및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과 자본주의의 유일신화(唯一神化)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화에 획기적인 기점이 된 1987년 이후의 노사분규에 대응하여 정부는 노사분규로 한국경제가 망한다는 논리와 함께 그것을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접목시킨 신공안정국으로 대처했으며, 이는 1989년 이후의 동구권붕괴를 아전인 수격으로 이용하여 '사회주의는 망했다=북한도 곧 망한다', 자본주의야말로 유일한 대안이다=사회주의는 우리의 영원한 적이다', 따라서 '조용히 하고 열심히 일이나 해라'라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재림한 더욱 무서운 권위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 3. 아시아적 인권개념과 국제인권법

여기서 인권이란 서구적인 개념이므로 아시아에는 필요없거나 아시아의 그것은 서구의 그것과 다르다고 하는 인종주의적인 네센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필자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인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경계를 중시하고, 문화의 상대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으나,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의 보편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문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적어도 유엔창설시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여 지난 1993년 6월에 열린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독재자들은 언제나 자국이 특수성을 이유로 하여 인권도 특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한국 군사독재정부는 물론 최근의 미얀마군사정권까지도 그러한 주장은 독재정권에 일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6년만에 자택연금을 해제당한 아옹산 수지에 이르기까지 인권운동가와 학자들은 강력하게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했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의는 각각 인권수호와 인권탄압의 진제로 주장되어 왔다.

물론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보편성은 전제로 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특수성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의 하나인 재산권이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보편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인권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 명정되고 있는 인권목록은 이미 국제적인 보편성의 그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필자는 소위 동아시아의 공통문화로서 유교적 전통이나 최근 회자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유교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나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인권의 부정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논의의 극단은 아시아사회는 전통적으로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이므로 정부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나, 실제로 권위주의는 경제개발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현상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보편성의 근거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이 갖는 인권에 대한 믿음이 각국의 헌법에 명정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범세계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침해한 입법이나 행정 및 사법, 또는 관행이 아직도 뿐리깊게 남아있으나 동아시아의 어떤 정부도 그러한 보편적인 인권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제인권조약 비준상황을 보면 국제적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적극적이지 않다. 19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모두 비준한 신홍공업국은 한국뿐이다. 그리고 앞 규약

의 선택의정서도 한국만이 비준했다. 그러나 그 비준과 실질적인 준수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뒤에서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또한 ILO의 조약비준상황을 보면 신흥공업국의 비준수는 다른 지역의 평균비준수보다 훨씬 낮다. 특히 인권에 관련되는 강제노동철폐에 관한 29조, 제105호조약, 노동단체권에 관한 제87호, 제98호조약의 비준수도 현저히 낮다. 예컨대 한국은 아직 어느 것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 4.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원리와 기능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본다는 점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그것에서 파생되는 원리들로서

첫째, 그것은 정부가 알고 행하는 것이 최선의 최고 지상의 가치라고 하는 국가지상주의이다. 여기서 국가는 혼정부 및 체제로 대변되며 둘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법적 권위는 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에 대한 어떤 도전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되고 정부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곧 능동적이 주체로서 그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춘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종교나 교육 등의 사회기관은 정치나 사회, 특히 노동과 관련되어서는 안되고 철두철미 그 본연의 순수한 직무에만 관여해야 한다.

셋째, 공산주의는 물론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은 군사적인 차원과 적대적인 세력과 같이 취급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취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매도된다. 모든 과오는 적에게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변명은 성립될 수 없다.

넷째,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군대의 강화와 군비의 확충이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며 군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공산주의에 찬동하여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동맹국의 군대에 대한 비판도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

다섯째, 공산주의는 자유기업의 창달을 적대시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경영소유권에 대한 어떤 도전도 반체제적인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현대의 국가안보는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의해 실질화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자본주의 원리는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산주의의 적화야욕에 가장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이므로 노동자의 권리,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상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원리는 국가(정부)의 주도하에 사상과 행위를 제한하는 행태로도 볼 수 있다.

첫째, 사상과 의견에 있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물론 민중민주주의 등도 철저히 규제된다.

둘째, 행위자에 대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어용노조나 단체 외에 민주노조나 민주단체는 철저히 금지되며 정부가 사용자가 되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노조나 단체도 철저히 금지된다.



다.

셋째, 행위에 있어 민주노조운동이나 통일운동 등 반정부적인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

이상 살펴본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기능은 국내 및 국제적 차원과 그 각각의 정치적 및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냉전체제의 유산이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아니라 세계를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로 구분하는 것 위에 존재한다. 물론 그것은 '자유'세계에서의 구별이고 '공산'세계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예컨대 '자유'세계를 '자본주의'사회라고 부른다) 여하튼 국가안보이데올로기가 적으로 규정하는 상대방은 '자유'세계의 경우 '공산'세계, '공산'세계의 경우 '자유'세계가 된다. 정치적으로 적대세계와의 교통은 철저히 금지되나, 경제적으로는 현실주의에 따라 어느 정도의 거래가 점차적으로 허용된다.

둘째, 국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자국의 반정부활동을 자국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세계의 이데올로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제적이 적대세계의 음모라고 상정한다. 협의의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전제에서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권력자와 대다수 민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음모의 일환으로 가정되는 국내투쟁개념과 함께, 반공산주의 또는 반자본주의는 각국의 지배계급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의 핵심이 된다. 반공산주의를 국가이념 또는 국시로까지 인정하는 나라는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다. 그러한 안보이데올로기는 또한 각국 국내정치에 대한 미군의 원조와 간섭을 합리화한다.

이를 민중층의 차원에서 보면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또한 정치과정상의 민중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강력한 행정부와 유약한 입법 및 사법부로 특징지워지는 중앙집권적 정권을 합리화한다. 그 결과,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정당화된다. 또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의 경우, 인권을 침해하는 기구로써 군대 경찰, 정보경찰 등의 조직과 활동이 합리화된다.

셋째, 국내적인 차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현존하는 경제적 힘의 분단을 정당화하고, 노동단체, 농민단체 등의 사회민주단체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한다. 이는 광의의 국가보안법으로서 특히 노동단체권의 규제로 나타난다.

1980년대에 들어 와서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월남전으로 인한 미국내의 정책변화에 의해 1970년대부터 나타났고 1980년대 말의 소련해체에 의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다시 강화되어 왔다.

1980년대에 와서 제3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개발독재정부가 조직된 민중의 증가하는 압력을 받게 되자, 급진적인 세력의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중산층의 여론을 기초로 하여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도 권위주의적인 개발독재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온건한 정권을 창출하는 데에 미국과 집권세력간의 공모를 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80년대 초에, 아시아에서는 80년대 말에 그러한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예컨대 필리핀에서 마르코스를 대신하여 급진세력이 아닌 아키노 정권이 성립된 뒤 한국, 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도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제를 민주화에 의해 성립된 정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곧 선거를 통한 지배 세력간의 경쟁은 증대되었으나, 민중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증대되지 못했고, 군부는 일단 정치일선에서 물러섰으나 엘리트민주주의와 군사독재의 공존을 지향하는 막강한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사회개혁이 전혀 이루어지 못해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운동은 여전히 국가안보이데올로기하에서 규제를 당하고 있다.

## 5. 협의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은 제3조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에 대하여 사형까지 부과한다. 반국가단체란 북한을 비롯한 반체제적인 국내외의 모든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조항은 동 제 7조의 이적단체의 결성과 가입에 대한 처벌과 함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음 국가보안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행하는 50여개의 행위유형에 대해 사형까지도 부과하며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경우도 처벌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간첩 및 목적수행의 경우, 그 내용이 되는 '군사상의 기밀 또는 국가기밀'은 남한에서 자명하고 당연한 상식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국민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6조가 처벌하는 반국가단체 지역에의 잠입 및 탈출에 대해서도 사형까지 부과하여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그외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있는데 전자는 법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후자는 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밀로 규정하므로 군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7조의 '찬양, 고무, 동조, 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제작'에 대한 처벌은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예술 등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북한을 지지하거나 그것에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 처벌한다. 심지어 단지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해도 그것이 북한측의 남한비난과 유사하면 처벌된다. 이 규정에 의해 사회과학의 고전적 저작이나 북한관련 저작들(300여종 이상의 금서가 있으나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출판하고 읽었다는 이유로, 또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제국주의로 비난하였다거나 미군이 보유하는 핵무기의 철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에 반대하여 다른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았다. 기타 국가보안법은 제8조에서 반국가단체와의 회합 및 통신죄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제10조에서 불고지죄를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제19조에서 구속기간의 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전향을 강요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그 강요를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등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들을 보안관찰법(과거의 사회안전법)에 의해 2년 이상의 보안감호에 계속 처함으로써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의해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제한하여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타인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포함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예방하기보다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 또한 그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모두 처벌되는 교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1990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법이 규정하는 정부의 허가에 관계없이 반정부인사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나 친정부인사는 허가에 관계없이 문제가 안된다. 이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처벌하는 이중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서적을 정부기관에서 읽으면 무죄이나 서점에서 사서 읽으면 처벌된다는 이중기준까지도 있다.

## 6. 광의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첫째 노동운동의 현저한 제한이다.<sup>3)</sup>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를 금지하며, 공무원의 노동단체권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정치활동은 완전하게 보장되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에 의해 현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쟁의행위는 물론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거부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쟁의 중의 집회는 집시법으로도 처벌된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등을 제3자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에 대한 제3자개입을 금지한 것이나 사용자의 편을 드는 제3자에게 적용된 적은 없고 오직 노동자의 편을 드는 제3자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문제는 그 구성요건이 '조종, 선동, 방해',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 '개입' 등과 같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행위유형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이며, 그 결과 인권침해에 자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연법과 영화법 및 음반법의 사전검열제도, 정기간행물의 등록제도, 방송의 통제, 정부독점의 교과서제도, 각종 선거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제한 등이 문제된다.

예컨대 영화법은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공서양속을 해가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이 지극히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이나 인권문제를 다루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는 심의를 통과할 수 없어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모든 방송국은 법적 구성상 정부에 종속되며, 방송의 내용도 '공정성', '자유민주주의의 신장과 인권존중',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등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심의되고 있다. 또한 각종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여 일반 국민의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금지하나, 사실상 애당초의 지지행위만을 처벌한다.

셋째 집회 시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과거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여 모든 평화적인 집회를 전투경찰에 의해 봉쇄하고 관련자

3) "노동운동에 대한 현저한 제한"을 서술한 부분은 현재 바뀐 것이 많다. 이 글이 95년 말에 쓰여진 것임을 감안하라. 97년 초 총파업 이후에 복수금지 조항 및 3자 개입 금지 조항 등의 대표적인 악법이 없어졌고 노조 정치 활동 금지 역시도 없어졌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한 현저한 제한은 여전히 남아있다. 99년 상반기에 진행될 노동정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그 규정은 1989년 개정되었으나 당국은 신고제도와 금지통고권을 남용하여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거나 진압과정에서 폭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

## 7. 결론으로서의 전망

이 글이 결론으로서 먼저 한국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아시아의 그것을 전망하도록 하자. 한국의 현 정권은 초기에 탈 군부 권위주의화와 사정개혁에 노력했으나 그것은 상층부 지배엘리트의 변동에 그쳤고, 오랜 군부권위주의체제가 구축한 완강한 보수주의와 경제성장주의를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여 왔다. 보수주의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경계하며 통일 등 사회운동을 국가안보이데올로기로 통제하고, 성장주의는 재벌의 해체를 통한 경제질서의 합리화와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아니라 재벌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등 자본의 논리를 강화한다. 그것은 1993년의 현대계열기업의 노동쟁의에 대한 정책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났고,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악법 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장주의는 한국이 분단상황에 있고 냉전적 반공이념인 국가안보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가짐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사회 내에 강고한 물질적 기반을 가짐으로써 더욱 강화되어왔다.

민주주의는 인권의 실질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것은 서구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적으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확보, 그리고 제2차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확보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정권은 아직 그 1차적 이행의 단계에도 완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통합은 사회구조의 개혁을 통하여 사회의 민중부문으로 인권을 확대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그것을 위한 국가보안법 및 노동악법의 철폐는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중국, 북한 등의 동아시아 민주화는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반을 둔 사회세력을 기층으로 하지 않고, 구체제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기존체제가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사회의 재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와는 다르다. 그 이유는 국가의 힘이 강력하다는 점, 냉전이 해체된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냉전체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인권확보도 한국의 그것과 같이 민주화의 당위적인 내용이 되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전망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권에 대한 믿음을 민주주의와 함께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아시아도 조만간 냉전체제의 잔재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한반도의 통일이 인권보장에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유럽과 같이 강력한 국가의 전통이 국가안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노사의 공조적 정치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아시아의 인권보장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될 때에만 우리의 전망은 낙관적일 것이다.

## 국가보안법 조항 분석

### 제1조(목적 등)

-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다.

제1항에서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확보한다고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 함은 개인인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한다. 이 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전체 국민의 이름을 빙 개인적 인권의 억압이다. 바로 제2항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 법이 그간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도로 행사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어 왔음을 1991년 5월 31일에 신설된, 제2항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제2항은 제6공화국하의 날치기 통과 때 추가된 조항으로서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들어간 '보너스'조항이다. 그러나 이같은 선언적 규정이 실제 법집행 기관의 자의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없이 확인되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침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2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에서의 열쇠이자 핵심규정이다. 뒤에서 설명할 모든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이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갖가지 행위유형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이 조항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국가보안법 분석의 지름길일 것이다.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정부를 침칭(僭稱)"한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만일 어린이들이 전쟁놀이를 하며 '정부', '반란군'을 칭했다고 이것을 정부 침칭이라고 할 것인가? 이 우스개 소리같은 말은 반국가단체의 해석과 적용과정이 포함된 실제 사건

을 보건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말이다. 한 관례는 상제교(上帝教)라는 종교단체가 성화신국(聖火神國)을 칭했다는 사안에 대해 “이는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sup>4)</sup> 비록 무조가 되긴 하였으나 검찰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믿는 천국조차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이 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1982년 7월 13일 선고, 82도 제 1219호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부 전복을 기도하고 정부전복 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성함을 요하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점에 대하여는 새삼스럽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의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제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정부참칭”은 그 자체로는 아무 죄도 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일 때 비로소 반국가성의 존재가 인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법의 명문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위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도 의미가 모호하여 법운용자의 자의에 그 해석이 맡겨져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음에도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형법에서 조차 ‘폭동’과 ‘국헌문란’을 분류해 두었는데 하물며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국가보안법은 그냥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변란”은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 상식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지 않고서 정부를 전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폭력이 요구되는가 아닌가는 법적평가에서 큰 차이가 난다. 실제로 많아야 20~30명 정도로 구성된 단체가 불분명한 용어에 의하여 반국가단체로 조작되는 일이 많았다.

####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 제99조 · 제250조제2항 · 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 제119조제1항 · 제147조 · 제148조 · 제164조 내지 제169조 · 제177조 내지 제180조 · 제192조 내지 제195조 · 제207조 · 제208조 · 제210조 · 제250조제1항 · 제252조 · 제253조 · 제333조 내지 제337조 ·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10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 ·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악취 · 유인하거나 함선 · 항공기 · 자동차 ·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 취거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 · 은닉 · 위조 · 변조한 때에는 3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 ·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의 제1항 제1호는 “형법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신이 없어도 무방한 규정임을 자백하고 있다.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98조의 간첩(군사기밀……)행위 외에도 국가기밀의 탐지 등 행위를 규정한다. 그런데 형법 제98조 군사상의 기밀에 대한 관례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밀과 동일하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sup>5)</sup> 더구나 국가기밀에

5) 이외수 · 정경식 공저, 『신국가보안법』, 박영수, 1987, 118쪽에서도 간첩죄와 따로 국가기밀의 탐지 등을 구별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4) 대법원 1956년 6월 29일 선고, 4289형상 제60호 판결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이 조항의 적용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일체의 사회적 사실들까지 모두 군사기밀의 범주에 넣고 있다.

피고인은 1975년 10월 14일부터 1977년 6월경까지 사이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와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자기도 일시에 자신의 목적수행사항을 그들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 김대중의 동향으로는

- 김대중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면회오면 그 추종자인 남해사람 정종표도 같이 면회온다……

다. 각 경찰서에는 데모진압을 위한 데모진압기동대가 편성되었다.

라. 여수 호남정유공장은 밤에도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기동하고 있다.

마. 농촌실정으로는

- 물가가 급등하고 비료값도 비싸게 올리면서 쌀값을 동결시켜 놓아 농민들만 죽을 상이다.

바. 향토예비군 실정으로는

- 향토예비군 소집은 35세까지다.

- 향토예비군 훈련은 돈만 주면 훈련을 면할 수 있고 돈이나 배경 있는 사람은 항상 나오지 않는다.

사. 관공서 민원창구실태로는

- 일반 민원창구에는 급행료라는 것이 있어 급행료만 주면 민원사무가 빨리 처리되고 급행료를 주지 않으면 잘 처리되지 않는다.

……는 등의 국가기밀을 직접 체험 또는 목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들키는 방법으로 탐지·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하고……<sup>6)</sup>

## 제6조 (잠입·탈출)

- ① 국가의 존위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 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죽제 <91.5.31>
-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이 조항의 핵심개념은 ‘잠입·탈출’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입’이라고 할 때에는 ‘몰래 숨어 들

6)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합 제407호 간첩 등 사건

어오는 것’, ‘탈출’이라 할 때는 ‘갇혀 있던 곳에서 빠져 달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동기·수단·방법에 제한없이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의미한다고 보고 처벌한다. 이렇게 볼 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휴전선 이북까지)라고 전제해 놓고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가서는 안될 곳을 정해 놓은 셈이다. 더구나 제2항의 ‘지령’이 의미하는 내용도 국가보안법 운용자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89년도 신년사에서 남한의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야당 총재들,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등을 북한으로 초대한다고 한 발언도 ‘잠입의 지령’으로 해석<sup>7)</sup>하였다.

웃지도 않은 일이지만, 만일 누군가 이웃집의 돌잔치에 초대되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 상황을 검찰과 사법부의 기준으로 서술하면, ‘그는 이웃집 주인으로부터 돌잔치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자기 집에서 탈출하였고, 돌잔치가 끝난 후 다시 자기집으로 잠입하였다’가 된다.

## 제7조 (찬양·고무)

- 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기변란을 선전 · 선동한 자는 7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⑤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형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이 조항이야말로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며 이제까지 민주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조항이기도 하다. 또 국가보안법에만 존재하고 다른 일반 형법에서는 비슷한 유형조차도 찾을 수 없는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우선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은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또한 적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처벌유형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찬양·고무·동조’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그 대상은 또 어디까지인가? 뿐만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에 이르면 이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성은 극에 달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북한의 서커스나 마술이 방영되

7)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판결문

는 것('남북의 창' 등에서 가끔 볼 수 있다)을 보고 '잘 한다'고 칭찬하는 것, 또는 월북한 아버지의 인격에 대해 자식에게 친양하는 어머니의 행위도 처벌될 수 있는가.

실제로 이 조항이 남용된 속칭 '막걸리 국가보안법' 사건의 몇 가지가 있다.

술자리에서 북한 군자를 부른 경우<sup>8)</sup>

가옥을 칠거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말을 한 경우<sup>9)</sup>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sup>10)</sup>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발언<sup>11)</sup>

음주잡담 끝에 "정치하는 놈들이 정치를 형편없이 한다. 김일성이가 정치하는 데서 사는 게 낫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삼등열차도 없고 돈 없는 놈이나 있는 놈이나 평등하다"는 등의 발언<sup>12)</sup>

한편 제3항은 소위 이적단체구성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운동단체나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사용되어 온 조항이다. 사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똑같은 행위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이적단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규가 아니라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제5항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로서, 구성요건의 추상성, 광범성, 그로 인한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행위대상인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에 대해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으므로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표현물도 이 조항에 해당되게 된다. 당국이 탄압하려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가의 소지품, 혹은 가택에서 소위 불온문건이 발견되면 바로 그것만으로, 다른 혐의점이 없는 경우에도 제5항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죄의 핵심은 불온한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내심을 처벌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한 마디로 모호해서 언제든지 공안 당국이 입맛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사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sup>13)</sup>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사법부에서도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남용 및 위헌의 소지에 대해 지적해 온 바 있다. 95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으며 그해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래 최초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5년 4월 서울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우근 판사, 북한소설 출판 사건) 95년 5월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영기 판사, PC통신 공산당선언 게재 사건) 96년 1월 부산지법 형사1단독(정희상 판사, 북한대학생과 팩스서신교환사건) 96년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박충렬 씨 사건) 등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요지는 "국가보안법 7조가 국민의 사상의 다양성을 사전에 봉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고 무죄판결이

8) 대법원 선고 1967년 7월 29일 선고, 69도 제825 판결

9) 대법원 1978년 12월 13일 선고, 78도 제2243호 판결

10) 대법원 1973년 3월 13일 선고, 73도 제166호 판결

11) 대법원 1970년 9월 29일 선고, 70도 제1325호 판결

12)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년 2월 17일 선고, 76고단 제12816호 판결

13) 이하 98년 8월 13일자 인권하루소식에서 인용

유는 "국가보안법 7조가 넓게 해석 적용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여부에 눈을 감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95년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제1항에서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고 따라서 제3항, 제5항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 및 인권침해 여부는 공안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상의 친양고무죄 적용을 최소화하겠다"(98년 6월 이종찬 안기부장)

"국가보안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98년 7월 박상천 법무부장관)

"절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않겠다"(98년 5월 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 7조의 구속자 대부분이 구속 서너달 뒤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온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혐의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법이 존재함으로써 구속과 석방이 계속되는 것이다.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 이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기존질서 측에

###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서 볼 때에는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즉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상 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95년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원래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유독 국가보안법만은 사안의 중대성을 평계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참고인의 구인과 유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국가보안법보다 더 큰 법익을 지니고 있는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는가.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의 위험성이 반드시 증대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더구나 "본범과 일정 정도의 관계가 있는 참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공범'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에서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위법성과 그 논리의 허구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을 간단히 이야기 해 보자.

첫째,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의 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에서 선언한 민주적 이념들을 부정하며 혼란하는 데에 쓰여 온 악법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전체에서 깔려있는 개념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자의적인 해석과 법적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미 현대의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반공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자신들이 치부를 가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 우리는 이제 국가보안법의 부당함과 그 논리의 본질을 알았다. 이 악법은 언제 어디서고 우리 자신에게 칼날을 세우고 날아올 수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단지 악법을 악법이라고 아는 데에 만족하거나, 단지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 중 한 두개가 개정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마땅히 애써 되찾아야 할 '인권'의 상징인 것이다.

## 국가보안법의 정치경제학

■ 이창수 (청년진보당 인권위원장)

### 1. 남한의 지배 구조 - 국가보안법 체계

남한의 현대사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라고 단언한다고 그것을 견강부회적인 억설이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남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법과 제도가 경제적인 토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남한 사회를 규정하는 하나의 체계로 구축될 수 있는 조건은 남북간의 분단이라는 민족의 왜곡된 발전과 지배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독점 자본과 그 이익에 충실히 복무해 왔던 독재권력(민간이든 군부든 간에)의 통치 구조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단순히 법률체계로 이해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정치경제적 법칙성에 대한 이탈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억압(일본 강점하에서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인 탄압(사회주의자와 진북한 인사를 통제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반민중적인 지배(민중의 생존권과 상관없는 정치적 상부구조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점에서)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지배클럭의 구성과 지배논리, 그리고 지배양식에 대한 이해와 이의 결과로서 민중의 억압된 삶의 구조 그리고 이를 혁파하려는 민중의 각성과 노동자 계급의 성장이라는 세가지 국면이라는 총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은 남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면상의 지배이데올로기와는 별도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데올로기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반민주 악법 반대투쟁이 갖고 있는 인식적 오류 또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는 남한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체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형성과 소멸을 형식상 국민의 대표체인 입법기관이 이를 정립시키고, 행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해석하는 식의 도식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사회구성체적인 상부구조의 지위를 간과하게 된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합법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선한 법률 체계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게 된다.

법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류세력(남한 사회에서는 소수의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과 이의 이익에 충실한 정치권력, 또 이와는 별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군부를 비롯한 관료세력)의 이해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라는 법률체계의 변경이나 교정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이런 행위들이 의미가 많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총체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보안법 체계로 이해하는 것은 민중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주류에 서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일 뿐만 아니라 법폐지 운동과정이나 법폐지 이후의 사회구성체를 변경할 수 있는 동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남한 사회의 지배권력을 국가보안법 체계로 이해하려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또는 이 구조의 극복은 진보적인 사상적 실천 또는 그 결과나 과정으로서 민중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의 고양과 새로운 권력 확보를 전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정치투쟁과 맥이 닿고 있다. 물론 하나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데는 정치투쟁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는 모든 부문에 대한 통합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치세력은 모든 부문세력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연합이 가능하며 이를 유효한 방안으로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하나의 법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지 않을 때, 기존 지배질서의 모순을 수정하고 이를 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2. 국가보안법의 정치경제적 맥락

우리는 여기서 국가보안법의 정치경제적인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하나의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우선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개관할 것이다. 또 이것을 진보진영의 시각으로서 재구성할 것이다. 즉 지배질서와 저항질서라는 맥락으로 해석하여 국가보안법이 왜 하나의 체계가 되고 정치경제적인 맥락에서 역압구조인가를 규명할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수 있는 양식은 국가폭력 질서가 용인되는 토양이다. 이것을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수 있는 정치적인 토양이라고 본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조가 우리의 첫 논의 대상이다. 사상적 남북분단이라는 구조에서 우리는 통일과 반통일의 논리구조에 개입된 국가보안법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라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성립은 아시아 세계의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세계의 신식민지성의 토양에서 가능했다. 우리는 남북분단을 미국 등 자본주의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약탈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이런 분석으로 국가보안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세계자본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해방 당시 현지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남한을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현지 자본의 맹아를 키우고자 했던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승만 정권 등 신식민지 정권이 일제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하지 못한 것과 미국의 세계전략과는 분리해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분단과 국가보안법의 성립하게 된 조건이 거시담론적인 제국주의적인 질서에서라기 보다는 현지 자본의 미성숙이 기본으로 갈리게 된다.

또 우리는 국가보안법 성립의 정치적인 맥락을 국가권력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민주적인 정치질서의 구축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배세력은 진보적인 정치인사와 사상에 대한 탄압을 구조적이고 합법적인 기제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법허위 의식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집권 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논리로 또는 군부의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상존은 집권세력(여, 야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식인 및 자본)들의 일정한 체제 협조주의(state cooperatism)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제3세계의 신식민지 속성의 다른 측면인 반민주적인 패권질서의 구축과 유지과정에서 파생되었다.

또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사회적인 간접비용 즉 안보논리를 통한 경제적인 독점을 가-

능하게 한 친자본주의적인 법률 체계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정치적인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이 과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전제는 국가안보 논리다. 국가안보논리는 일종의 경제적인 공공재(public goods)인데, 특정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갖지는 않지만, 전체에는 이익이 되는 지제라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논리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논리에 입각한 다른 제도인 국민개병제가 표면적으로는 공동체 방위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원의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불평등한 것과 같다. 자신의 이익을 지킬 것이 별로 없는 소작농 또는 그 자제나 재벌 또는 그 자체가 모두 하나의 1인으로서 입대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은 국가를 지킨다는 논리앞에서 있는 자의 것을 지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이라는 공공재는 결국은 현 사회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지배질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자본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해 주는 조건 가운데 하나이고 따라서 친자본적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른바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등 국가보안 사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출이 상당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민복에 쓰일 예산이나 자원을 국가안보 논리 그 자체로 생존하고 있는 사회적 소비계층 즉 공안 관료들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는 구조에 있다. 물론 이들의 존립 기반은 총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주영 씨가 처음 방북했을 때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사상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공공연하게 하는 법률체계이다. 이것은 단순히 부르조아들이 과거 역사적인 투쟁과정에서 전취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에 본다면, 결국 국가보안법의 성립이 일반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정성의 파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적절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되거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서 이런 시각은 인권 또는 법폐지 운동과 맥을 닿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사회적인 발전을 왜곡시키거나 지연시킨 결과에서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된다. 역사는 발전하거나 진보한다고 볼 때,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런 기본권의 침해라는 측면 보다는 이로 인해 사회적인 자발성 - 또 이를 기초로해서 파생되거나 될 결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 - 에 대한 파괴 또는 왜곡을 이룬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인 지체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안보 논리가 제약된 또는 한정된 자유권의 보장이 아니라, 발전권에 대한 파괴 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 악법 거부 또는 어기기 투쟁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을 보자.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인류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생산력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창의력을 제한한다. 음악, 미술, 사상, 과학 등의 발전과 그로 인해 파생될 인간의식의 자유로운 발현을 억제한다. 따라서 현 체제의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나중 세대의 발전이나 성장을 위해서 사회전반적인 토대를 없애는 법률체계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차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원의 위상을 살펴 보았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철저하게 현 사회의 주류인 정치권력, 자본을 위한 법률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지배블럭이 피지배블럭 - 여기서 피지배 블록은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어떤 국가적 기제도 자발적이고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모든 세력의 집합으로 본다 - 을 억압

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 국가보안법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고 남한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3.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한 사회의 패러다임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속성으로 국가보안법이 남한 사회에서 하나의 체계로 구축되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과연 남한 사회를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가를 예측해 보자. 이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어떤 경로와 과정으로 폐지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해결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법의 폐지가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폭력성 즉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배 블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에 저항하는 모든 질서·세력에 대해서 물리적·정신적 폭력속성을 근절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와의 변경 - 그것이 폐지든, 개정이든 간에 - 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기득권 세력과 이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 개혁하려는 것이 남한 사회의 국가 폭력 질서인 국가보안법 체계를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가의 민중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는 모든 투쟁과정 속의 하나의 하위적인 범주에 속한다. 우리는 이것을 정치투쟁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정치적으로 지배블럭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쩌면 조삼모사식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자와 민중의 새로운 정치권력 창출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1.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1) 국가보안법의 핵심개념인 '반국가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과 남북교류의 진전이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갈수록 법질서의 모순과 국민의 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 (2) 국가보안법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표현들은 근대형법의 요구인 죄형법정주의와 서로 맞지 않은 것으로서 자의적인 법집행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 (3)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할 행위들은 굳이 처벌하려면 기존 형사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다.
- (4)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는 용공조작 등 남용을 통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바로 그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 (5) 국가보안법은 그 국민에 대한 위吓(威嚇)효과로 인하여 국민의 발랄한 사고와 의견발표를 억눌러왔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진보를 막아왔다.
- (6) 현행 국가보안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가운데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립 자체가 무효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1980년 쿠데타로 성립한 '국가보위법회의'에서 제정된 것이다.

###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은 필요한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난다는 것도 거짓말이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은(7조를 제외하고) 모두 형법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도) 인정한다. 이 사실은 바로 형법으로써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권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압도적 다수가 제7조(찬양·고무)위반사건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은 '내부의 적'을 겨냥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방법은 용공조작과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논리는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효능이야 어떻든간에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의 상징으로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이 법이 없어지면 국민의 안보의식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어찌면 이런 주장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주장은 바꿔 말하면 첫째로 기존의 철저한 반공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정권 담당자, 보안법을 '먹고사는' 공안 세력, 극렬한 반공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온갖 형태의 우익세력들)의 권위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는 뜻이겠고, 둘째로는 포괄적으로 국민을 위하(威嚇)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공갈장치'가 없어진다는 뜻임이 틀림없다. 국민에 대한 사상통제가 바로 국가안전을 보장한다는 사고방식은 완전히 전제주의의 사고방식이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오히려 국민에 대한 위협과 사상통제를 해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인정하되 이 법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남용을 금지시키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역대 정권의 이런 거짓말에 수없이 속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구조상 남용을 피할 수 없는 법률인 것이다. 아니, 국가보안법은 남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률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진짜로 없어지면 이 법은 아무런 정치적 가치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자연소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1989년에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되었던 박태훈 씨 사건이 한국도 조약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는 박태훈씨에게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무부 주장은 우리가 신물이 나도록 들어온 파렴치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이후 374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고 그 중 359명이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되었다는 엄연한 사실만 보아도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 3. 국민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원하고 있다

월간 ‘말’ 98년 6월호에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는데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즉 “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그런 것을 바라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여론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98년 11월 22일에 한겨레신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공동 여론조사를 벌였다. 전국 거주의 20살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이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폐지	개정완화	현행유지	강화	기타/잘 모름
일반국민	7.7%	70.5%	11.6%	7.3%	2.9%
변호사	27.5%	65.4%	4.6%	0.7%	2.0%
법학교수	29.0%	70.0%			1.0%

이와 같이 답변한 사람들 중 절반 정도가 국가보안법이 악용·남용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국민 40.9%, 변호사 52.9%, 교수 63.0%) 또한 국가보안법 제정의 취지와 목

적이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는 질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일반국민	26.4%	55.8%	17.8%
변호사	27.5%	69.2%	3.3%
법학교수	18.0%	77.0%	5.0%

이와 같이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월간 ‘말’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본격적이고도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양심수의 가족

## 김대중 정권 1년,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1. 여전히 강력한 국민통제 수단

지난 해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에서 권력의 권위주의적 요소들은 하나도 척결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도 안되고, 군림하려 해서도 안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국가가 모든 '선과 진리의 잣대'를 쥐고 국민을 강제하려는 모습을 계속 확인해야 했다. 거리에서 모든 국민들을 불순한 범죄자로 취급하는 불심검문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정보기관들의 도감청은 오히려 증가했고, 경찰의 사찰카드가 실체를 드러냈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과거 정권 때처럼 '불순세력, 체제 전복세력'이라고 매도, 위협하는 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국가폭력의 대명사는 국가보안법이다. 개인의 내면마저 통제하고,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입장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반국가사범, 또는 이적사범이 되어야 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만으로도 이 나라는 민주화 될려는 멀고도 먼 길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0여년의 역사 동안 국민들을 공포로 통치하는데 역대 정권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표방하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서도 여전히 악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폐지는커녕 개정조차 할 수 없다던 정부가 최근에는 7조의 개정을 말하고 있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그 법에 의해 구속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의 문제는 전체 문제 중의 병산의 일각일 뿐이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양심수들의 존재는 대부분의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항하였다가는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수시로 확인시켜주는 실체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은 오랜 세월, 자기 스스로의 상상력을 발동하여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길들여졌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입식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위에 국가보안법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대학이나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은 항상 도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사회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강제하는 주요한 통치수단이었다. 여기에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수사권을 지닌 수사, 정보기관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강력한 국민통제 장치였다. 이들 기구들이 민주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사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회 제반의 영역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이 끼친 영향들을 일일이 검토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일목요연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반 범주의 국가보안법 현상을 모두 따져보는 것은 오늘의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지난 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 문제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검토 과정에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의 남용 현상과 확인하였고,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이 무너져 내리는 있는 현실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지탱하는 이 사회의 강고한 저항세력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양상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 2. 98년 국가보안법 적용 양상

정부 출범 10개월째인 지난해 12월 23일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374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양심수 구속자 679명의 55%가 국가보안법 구속자란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현 정권 출범 8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310명이 구속되었던 것인데, 이는 김영삼 정권 초기 8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67명보다 4배나 많은 수였다. 결국 김대중 정부도 역대의 정부처럼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정치적 반대세력인 학생과 노동자, 재야세력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었으며, 따라서 인권단체들의 '마구잡이식 구속'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급기야는 현직 민선단체장이 포함된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3년 이상이나 불법도청과 몰래 카메라 동원해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반국가단체로 낙인찍는 일마저 저질렀다.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오남용의 방지를 수차례 정부가 약속했지만, 오히려 국가보안법 남용이 강화되었다.

조직사건은 총 14건이 발생했다. 이들 조직 사건들을 검찰의 주장에 의해 대별하면 북한과 연계된 조직과 자생적인 사회주의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과 연계된 조직사건으로는 울산부산지역 이른바 영남위원회(15명), 부산 인제대 자주대오(11명), 울산대 자주대오(5명), 범민련(7명), 단국대 천안 자주대오(5명), 민족사랑청년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구속자	1	13	31	84	91	111	123	90	58	38	39	679
국보법	1	7	18	53	55	72	57	27	33	17	34	374

98년 양심수 현황(98년 12월 23일 민가협 통계)

노동자회(7명), 민족통일애국청년회(3명) 등이

었다.

반면에 후자에 속하는 조직사건으로는 국제사회주의자(27명), 북부노동자회(8명), 안양 민주화운동청년연합(9명),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6명), 학생연대(4명), 항공대 학생연대(4명) 등이었다.

이들 조직사건 건수로는 이들 조직사건들이 거의 반반씩이지만, 구속자수로는 북한과는 관련없는 이적단체 구속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적단체라고 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문제삼기보다는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는 권력의 '내부의 적'으로 돌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직사건 중에서 범민련, 민애청, 북부노동자회, 안민청, 진보민청, 학생연대, 국제사회주의자

등은 이전부터 계속 국가보안법에 의해 침탈을 받아왔던 조직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꽃감 빼먹듯이 필요할 때면 수사기관이 이를 조직을 적발, 구속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진보민청의 경우는 이전의 소속 산하 조직들이 모두 이적단체로 적발되었던 상황이었고, 이들을 통해 장기간 기획수사를 해오다가 마지막으로 진보민청 중앙을 국가보안법으로 옮아맨 것이었다. 또, 국제사회주의자들의 경우에는 91년 이후 무려 150여명이 같은 조직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을 본다면 수사기관들에게는 이를 조직들이 자신들의 '철밥통'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먹이로 활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안양민청연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단체의 성격은 합법 시민단체로 전환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여는 등의 이적활동과는 무관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였다. 이런 무리한 법 적용은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영남위원회의 경우는 강령이나 조직체계 등을 입증할 증거라고는 출처불명의 디스켓 한 장이었음에도 반국가단체로 법원이 인정, 중형을 구형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조직사건 중 반국가단체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7조)로 구속되었다. 조직사건에서만 아니라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를 중 374명 중 영남위원회 15명을 제외한 359명이 모두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7조는 사실상 국가보안법 사건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도 이전과 다를 바 없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범주는 한총련 관련이었다. 한총련 관련 구속자는 총 16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26명은 한총련 출범식 관련이었고, 나머지는 한총련 불탈퇴 때문에 구속된 것이었다. 아무런 이유없이 단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의 자의적 적용에 의해서 대부분의 한총련 학생들이 구속되었던 것이다. 지난해 10개월간 37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구속자가 바로 이들 한총련 학생들이었던 것이다.

이들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적 하급력을 미치기 힘든 학생이나 청년단체 성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규현 신부를 구속한 뒤 곧바로 이례적으로 보석으로 풀어준 예나 노동절 집회 이후 정치연대 대표 오세칠 교수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가 흐지부지된 것에서 확인하듯이 사회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적용등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공안기관들이 교묘하게 분리 적용한 결과였다.

## 최근 주요 공안사건 현황

###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 (1) 사건 개요

1998 7월 22일 부산 경찰청은 김창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비롯 울산지역 18명, 부산지역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하였다. 부산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민전 영남위원회(일명 동창회)는 울산지역 '희망의 젊은 연대'를 비롯한 12개 단체, 부산지역 '부산노동자회' 등 7개 단체, 양산지역 1개 단체 등 재야 합법, 반합법조직에 조직원을 침투 및 외곽 지원단체로 활용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친목단체 20여 개를 조직화하고 단체회원 500여명을 동조지원세력으로 활용 계획을 세웠다. 또한 한민전 영남위원회는 북한동포돕기모금을 김정일보위투쟁으로서 전개하여 5억 3천만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의 조직의혹과 불법적인 연행과정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 (2)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의 조직의혹

- ① 조직결성과정에 있어서 조직명, 결성시기, 조직 강령, 활동지역에 대한 어느 하나도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한민전 산하 영남지역위원회' 조직명은 7월 24일 1차 경찰수사 발표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조선노동당 영남지역당' 또는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으로 지칭하는 등 조직명 자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② '한민전은 대남선전동기구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7.24 수사발표에서는 '92. 3. 16 동 조직을 한민전(조선노동당 산하)의 직접지도를 받는 영남위원회(위원장:동창회)로 재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의 사유'에서 동창회 외곽단체로 96.5.20 울산대에서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희망의 젊은 연대'는 96년 9월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아라가든에서 당시 심완구 시장, 김성렬 시의원 등 지역인사들의 축하 속에서 '희망의 젊은 연대 준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진 30대 지역청년들의 모임으로, 1여년의 활동 후 97년 10월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임시총회를 거쳐 자진 해산한 조직이다.
- ④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의 사유'에서 '희망의 젊은 연대'가 이적 단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회장 및 각부장 등을 역임했던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경순, 임동식, 이정희 등은 회원이 아님에도 이적단체를 구성,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 ⑤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조작하고 있다. 지금도 북녘동포 돋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휘호를 비롯해 박세리, 박찬호, 신중현,

서태지 등 유명인사들이 평소에 아끼던 골프채, 사인 볼, 전자 기타, 옷과 CD 등이 경매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고, 북한과 대축전을 하자고 준비하고 있는 판에 순수민간단체의 북한동포돕기를 아직 행위로 몰아가는 행위는 지금이 국민의 정부시대임을 망각한 보수혜력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밖에 몰 수 없다.

### (3) 대책위의 입장

1. 우리는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2차재판이 있던 10월26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정

#### 연행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

- 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긴급체포로 영장으로 연행했다.-체포통지서에서는 "피의자가 급히 은신하려 하므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라고 제시하지만 연행자 전원이 도주 상태나 도주를 준비하기는커녕 7월 22일 새벽 6시30분경 모두 무방비 상태로 집에서 잠을 자다가 연행되었고 김창현 구청장은 7월23일 4시30분 구청장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연행되는 등 도주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 ②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수색했다.-연행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없이 수색하여 마구잡이로 압수해갔다. 심지어 아이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안방에까지 들어와 이부자리를 들추고 장롱을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김창현 구청장의 경우는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마음껏 압수수색하였다. 또 부산노동자회 사무실의 경우에도 보안수사대가 철문을 드릴로 뚫고 사무실 벽을 뚫고 침입하여 컴퓨터 2대와 각종 상담자료, 책 등을 탈취해갔다.
- ③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대부분의 연행자가 미란다원칙을 요구하였지만 묵살당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집의 전화코드를 빼버리거나 폭력적으로 전화기를 빼앗는 등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막아버렸다.
- ④ 강압적인 수사를 자행했다.-임동식씨의 경우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부산시경 12층 에어콘도 틀지 않은 조사실(당시 35도의 무더운 날씨)에서 새벽 1시까지 조사하고 다시 새벽에 일찍 불러 사실상 잠을 못 자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으며 김이경씨의 경우도 하루종일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였다.
- ⑤ 가족을 빌미로 외유와 협박을 일삼았다.-김창현, 방석수, 홍정련 등에게 "말하지 않으면 배우자도 구속시킨다."고 협박했으며 임동식에게는 "자백을 하면 처와 처제를 풀어주겠다"고 희유하는 등 혐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 ⑥ 아이엄마의 구속과 부부동반구속은 아동학대이며 반인륜적인 행위이다.-임동식, 이은미씨 부부의 경우, 박경순, 김이경씨 부부의 경우, 홍정련씨의 경우
- ⑦ 중환자들에 대한 강압수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간경화로 투병중인 박경순씨, 만성디스크 환자 이은미씨, 연행과정의 부상으로 수술과 긁스까지 한 이철현씨

리하면서 "우리는 피고인들을 죄를 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 동료로 생각한다. 또한 무죄추정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이번 재판이 독재정권시절처럼 정치재판으로 인해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부의 이러한 의지에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독재정권시절의 정치재판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의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소신있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오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하는 도감청 자료, 컴퓨터 디스크, 비디오 테잎 등 모든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여 '반국가단체'의 죄목으로 선고했다. 또한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은 검찰의 구형과 거의 흡사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증거물에 대한 진실성, 반국가단체와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재판부의 태도는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보호에 대해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낼 뿐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의와 진실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소위 '국민의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에 대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하에서 개혁은 고사하고 헌법에서 조차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마저 송두리째 묵살되는 치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2.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한 도감청자료, 정체불명의 협조자가 제공했다는 디스크에 대한 무리한 증거채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선고결과는 '국민의정부' 하에 사법부 개혁의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고 독립적인 법기관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부가 아직까지도 정치논리에 끌려 다니는 구태의연한 기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팽개친 행위이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한 증거재판주의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이를 부정함으로서 객관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진보세력에 대해 무참히 인권을 유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독재정권시절의 관행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이다.

그간 3년이라는 장기간의 감청으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감청에 대한 심사숙고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조작의 가능성성이 높은 컴퓨터 디스크조차 제공자인 협조자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내용이다.

3. 우리는 이번 사건의 선고결과를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에 의한 결과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폐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법으로서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진보세력을 제기하는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이러한 상식적인 기준을 통해 소신있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문화되어있는 법을 적용하는데 급급하여 공안세력의 꼬두각시를 자임하고 나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므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재판의 상식을 무시한 원시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분명한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재판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폭거이다. 이번 선고결과처럼 재판의 과정과 내용에 상관없이 검사와 공안기구의 장단에 맞춰 정황만으로 선고를 한다면 재판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던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범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식을 벗어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소신있는 판결로 인정할 수 없다.

4.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영남위원회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서 아직도 통일의 족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경찰과 검찰의 끼워맞추기식으로 탄생된 영남위원회는 전혀 실존하는 조직도 아니고 조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어 있는 자 또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의혹의 증거물들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선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서 우리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1999년 1월 15일

국민기본권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

노동탄압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

## 한총련 관련

### (1) 탄압 상황<sup>14)</sup>

검찰, 한총련 조직재건 사전 차단키로<sup>15)</sup>

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13일 최근 한총련의 조직재건 및 폭력시위 움직임과 관련, 7기 한총련의 임시집행부가 구성되기 전에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미수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청, 안기부,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사법합동수사본부 실무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조기 검거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한총련 일부 잔류세력이 지난 5일 반미 폭력시위를 주도한데 이어 7기 집행부 구성을 통해 조직재건과 세력규합을 꾀하고 있어 이를 사전 차단키로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이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공안합동수사본부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공안사법 합동수사부장」 명의로 2월부터 각 대학 학생회장 앞으로 "7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탈퇴 권유문"을 발송했다. 검찰은 권유문에서 "금년 3월 말까지 한총련 탈퇴 권유기간으로 설정하고 그때까지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가입죄로 검거,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들 앞으로도 '제 7기 한총련 대의원 학부모에 대한 탈퇴관련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가입죄라는 중한 죄로 사법처리된다"며 가족들로 하여금 한총련 탈퇴를 권유할 것을 종용했다.

학생들, 한총련 불탈퇴 움직임 검찰은 권유문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으며 진보적 혁명운동을 가장하여 극우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별정책은 치료목적의 집도이나 한총련이 주장하는 대북 교류는 살인목적의 집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에게는 "국가존망이 걸린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의하여 친북이적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인정된 한총련 소속의 학생들은 화염병투척·쇠파이프 휴대·투석 등의 폭력투쟁을 획책하면서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운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운동에 대한 방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총련을 올바르게 혁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원하는 한총련 탈퇴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 연합도 성명을 내 "한총련 불탈퇴 선언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총련 탄압의 도구가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련은 지난 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으나, 당시 법원은 한총련 전체에 대해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올해의 경우 한총련은 4월께나 대의원대회를 치룰 예정이어서 7기 한총련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 (2) 인권 유린<sup>16)</sup>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대학생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더욱 심화된 대학생 탄압은 최근까지도 마구잡이 연행과 대량구속이라는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98년 3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 수는 총 1천6백여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구속된 대학생만도 2백64명(8월 28일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병력의 과잉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8월 31일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연행된 유성철(강원대 사회대 학생회장)씨는 학생회실로 뛰어든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 27일 새벽 3시경 단국대 천안교정에 진입한 경찰병력 2백여 명은 학생회실을 온통 뒤집어놓고 학생들이 리포트용으로 보관하던 컴퓨터디스크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족에 가해지는 협박과 회유 때문에 고통받는 수배자들도 늘고 있다. 경찰이 수배자의 학부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당신 자식은 뺄갱이"라고 말하거나 "자식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부모를 불안하게 해 자수를 강권케 하는

14) 99년 2월 13일자 인권하루소식 인용

15) 99년 1월 13일자 중앙일보 기사 인용

16) 98년 9월 29일자 인권하루소식 인용

등 대학생 연행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IS(국제사회주의자) 사건

### (1) 현황

올 1월 14일 명동성당 입구에는 못보던 천막 하나가 또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IS 출소자 대책위]가 자신들의 법정구속을 규탄하며 세운 천막이다.

지난 98년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었다. 98년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International Socialists of South Korea)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의철씨(인하대 의대)가 다시 끌려가 재구속(법정구속) 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5월에

#### ▶▶ 국보법위반 피고인 형량 놓고 형평성 논란 (2월 8일 한겨레신문)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대학생을 “사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시켰던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사회주의 조직의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박송하 부장판사)는 8일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에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3년~2년을 선고받은 한모(27·대학생)피고인 등 7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초 한피고인등과 같은 조직원으로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의철(21·인하대 의대3년)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조차 사회주의 사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었다.

변호인단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주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씨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한 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난이 일자 다른 피고인들은 그대로 풀어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는 혼자 재판을 받으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씨등은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의 사상에 따라 남·북한을 모두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규정,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을 조직 또는 가담한 뒤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책자를 판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으며 이씨의 법정구속 이후 명동성당에서 항의농성을 벌여왔다.

함께 집행유예로 풀려난 다른 12명의 사람들도 똑같이 법정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이 바로 천막농성의 주인공들이다. 먼저 이의철씨가 다시 형을 선고받은 과정을 보면

· 재판장: 피고인은 1심 최후진술에서 “사회주의 사상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만국의 노동

자여 단결하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이의철: 그렇다.
- 재판장: 어허!!!! 피고는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잘 모르나 보지...?

어이없게도 이의철씨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이유만으로 재구속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모습이다. 머릿속의 생각만으로도 사람을 가둘수 있는 나라. 그러한 법조학이 엄연히 효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다.

1999년 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재판장에서는 박효근 씨 등 11명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항소 결심이 있었다. 이 날 11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IS)은 법정에서 자신들을 방어하는 최후진술을 했다. 또 자신들이 사회주의자임을 떳떳하게 밝혔다. 이 날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인 7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IS)도 법정구속(재구속)을 위협으로 사상과 신념을 칠회시키려는 검찰과 법원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다.

## 청년진보당 탄압



### (1) 상황 개요

청년진보당 대구 달서구갑 지구당 임수진(26세, 서강대 졸) 위원장이 지난 2월 22일(월) 이적단체 구성 「전국학생연대」 혐의로 대구에서 체포되어 24일(수) 구속되었다. 임수진 위원장은 낮 1시경 대구 사투리를 쓰는 여자로부터 “노조원인데 상담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인 크리스탈 호텔에 갔다가 잠복중이던 서울시경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위원장의 연행사실은 가택수색 차 형사들이 대구 집에 들이닥친 밤 9시경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 (2) 대책위 입장<sup>17)</sup>

임수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진보정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한편에선 사면복권, 한편에선 체포·구속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우리는 25일(목)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앞두고 발생한 청년진보당 대구 달서구갑 지구당 임수진 위원장의 구속 사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사건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단행한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 이면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체포와 구속이 엄존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 사건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의 경우 국회에서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안기관이 또다시 이 조항을 적용해 구속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한 번 활동으로 언제든 잡아들일 수 있다?

거짓 유언·기습 체포, 공안기관의 작태에 분노한다

17) 청년진보당 당보 12호 중 발췌

더구나 임위원장은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회인으로서 합법적인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3년도 더 된 학생운동 전력을 문제삼아 뒤늦게 체포·구속하는 것은, 한 번 이적단체에 연루되면 이를 벌미로 언제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는 발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권력의 횡포인 것이다. 또 노조원을 가장해 거짓말로 유언, 기습 체포하는 등 정당한 법집행 절차를

### 경찰청 보안수사대, 구로구을 재선거 정당연설회장서 불법정치사찰 자행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관원이 국회의원 선거현장에 나타나 진보정당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밝각됐다. 지난 3월 16일(화) 청년진보당 구로구을 재선거 최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구로 애경백화점 앞에서 개최한 '제1차 정당연설회'에서 참석자 개개인에 대해 집중적인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이 운동원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이는 그간 진보운동진영에 대해 진행돼 온 불법적 정치사찰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자, 청년진보당 임수진 대구달서갑 위원장 구속수사에 이어 벌어진 명백한 진보정치 탄압으로 진보진영 전체의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이날 정당연설회장에서 청년진보당 당원들에 의해 붙잡힌 이 기관원은 당원들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도주를 시도, 제지당했으며 이후 청년진보당 선거사무실로 임의동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 기관원의 신분확인을 부탁하는 당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사태를 수수방관했으며 사무실로 함께 동행하자는 당원들의 요청도 거부했다.

선거사무실에서 이 기관원은 자신이 "과출소 소속이며 상부의 지시로 과견돼 현장에서 사진만 촬영했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서울지방 경찰청 보안4과 보안수사대 소속 이달우씨로 밝혀졌고 정당연설회 도중 당원들이 외친 구호와 찬조연설회의 신분, 플래카드 내용 등을 적은 메모도 함께 발견되었다. 구로경찰서 보안과장과 경찰서장은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요청했고 선본측이 이 기관원의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모른다는 답변만을 반복했으며, 이후 형사들을 대동한 경찰서장은 선거사무실까지 찾아왔다.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거법은 경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자유없이 선거연락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진보당은 이번 사건이 분명한 정치사찰이며 진보후보 기호3번 최혁선본에 대한 선거방해활동이라 규정하고 강력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17일 새벽 2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건대응에 들어간 청년진보당은 17일 오전 경찰측의 정치 사찰을 방조한 선관위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약 30여 명의 운동원 및 당원들은 항의 방문 도중 구로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불법정치사찰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정치사찰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커녕 항의방문중인 선본 운동원에게 전경들을 앞세운 욕설과 폭행을 자행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운동원의 카메라가 파손되고 일부 당원이 부상을 입었다. 오전 12시경, 선본 대표자 3인은 선관위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약 1시간여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경찰들의 사찰행위가 선거 방해라 볼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 공명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의 역할을 방기한 채 경찰의 진보정당 탄압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시한 공안기관의 구시대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현행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합법정치활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우리는 구속된 임위원장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과거 전력을 빌미삼아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표방하는 진보정당의 현행 지구당 위원장을 체포하여 전격 구속한 것은 합법적 정치활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보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은 허울일 뿐이다. 우리당은 모든 진보진영과 연대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준법서약서와 전향서

## · 그 종이 한 장의 의미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 1. 서론

“인간의 내심은 법적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여기에 개진하려는 나의 내심을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근거로 삼아 나의 신체를 구금해 놓을 판정을 내릴 권한은 당신들에게 없다. 나의 내심을 심판할 권리가 없는 당신들에게 내가 나의 내심을 고백해야 함은 분명히 모순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감히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내가 한낱 처분의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임을 주장하기 위함이다”<sup>18)</sup>

지난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그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박장관은 “건국 50돌 기념 8.15특사와 관련해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앞서 전향제도에 따른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sup>19)</sup>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참여연대 등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이러한 준법서약제가 전향제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반면 언론은 대체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인권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전향제도의 폐지는) 정부가 전향제도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전향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면서도 모든 공안사범들에게 서약을 받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전향제도의 존속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다. 양심수에 대해서 석방을 미끼로 서약서를 요구한다는 작태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의 행위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갖는 인권단체로서 모든 정치범에게 그런 반성문을 전제로 해서 석방하겠다는 정권을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원래 전향제도가 일제의 잔재이며 전향제도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제도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하는 것이다”<sup>20)</sup>

“정부가 8.15사면부터 시국사범 등 양심수에 대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새 인권기준을 적용해 사면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화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이렇게 하여 준법서약제도는 전향제도를 대체하여 이 나라의 양심수의 석방 기준, 행형기준으로서 새롭게 자기매김하였다. 이것은 과거 악명이 높은 전향제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폐지한 것은 큰 진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한 준법서약서라는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1930년대의 전향제도에서부터 1998년의 준법서약제도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경로가 이토록 험난하고 더디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했다는 김대중 정부, 독재의 희생물로서 수난의 대명사였던 민주화운동과 야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국민의 정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하고 다니던 분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또다시 양심수에게 준법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종이 한 장에, 앞으로 법 잘 지키겠다는 서약서 하나 쓰는 것이 뭔데 그 난리냐고 아마도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그 종이 한 장, 그 말 한마디가 얼마만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않고도 내주었던 것이 노태우, 김영삼 정부였는데 최고의 민주주의 정부라는 이 ‘국민의 정부’하에서 그 서약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보내 줄 수 없다는 위협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1세계 벽두에 우리가 진전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길은 아직 힘하고 멀다는 것을 알겠다.

### 2. 전향제도의 시작과 끝

#### (1) 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제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창작품이다. 1930년대 일제의 군국주의 강화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었다. 1936년 제령 제16호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제정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출옥, 형집행종료가 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사상활동을 단속하고 감시하는데 활용하였다.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의 7개소에 보호관찰소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 민주주의자로서 전향하지 않은 자들을 이른바 사상범이라고 규정하여 보호관찰대상으로 삼았다. 이 때 확립된 전향의 기준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에 대한 조사방법의 전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이에 따르면 “국체변혁사상, 혁명사상을 방기했는가 여부”였으나 전시파쇼체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정신을 체득하여 실천하기에 이르는 것을 전향의 최종단계로 삼았다.<sup>22)</sup>

이러한 일제하의 악독한 법제도가 독립된 대한민국의 한 법질서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1948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좌익들에 대하여 보도연맹을 조직하고 그 가입을 강제하고 사상적 전향을 시도하였다. 1956년에는 국가보안법 파동 이후 국가관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18) 서준식, 나의 주장: 반사회안전법투쟁기록, 형성사, 1989, p225

19) 1998.7.2차 한겨레 신문 기사

20) 민가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3단체의 1998.7.1자 성명서

21) 1998.7.2자 한겨레신문 기사

22) 조국,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비평 1988년 여름호, pp.326-328참조

조직적 전향이 시행되었고 70년대 초반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사회안전법이 제정되었다. 감옥안에는 차별대우와 가혹행위가 이어져 비전향자들은 '곱징역'을 살아야 했다. 1980년대 이후 학생, 노동자, 재야인사 등 시국사범으로서의 장기수가 양산되면서 그 이전의 남파간첩 등 좌익 장기수들의 전향공작 실태가 함께 알려졌다. 전향제도에 대한 비판과 중단의 요구가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1998년 7월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 (2) 전향제도 현법소원 경과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비전향장기수들은 지난 1992.2.15 사상전향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즉 이들은 사상전향을 사실상 강요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온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해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헌법소원의 주도적 역할을 한 민가협 등은 기자회견 당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분단의 모순 속에 자신의 양심을 굳굳이 지켜내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사상을 전향치 않았다는 이유로 길게는 30년에서 42년까지 이르는 무한궤도의 옥살이를 해야 하며 목숨마저 전향의 홍정거리로 전락하는 참혹한 장기수의 실태를 폭로하고 궁극적으로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사상전향제도의 철폐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되찾고자 합니다"<sup>23)</sup>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며 심지어 사상전향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건 규정의 목적은 청구인들에게 사상전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로부터 다른 일반 재소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민주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들과 같은 확신범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 파괴하려는 사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본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본건 규칙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본건 규정으로 인한 간접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sup>24)</sup>

결국 이러한 헌법소원도 몇 년을 묵혀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소득없이 기각되고 말았다. 인권과 사상의 자유, 평등권이 여지없이 법의 이름으로 또 한번 유린되는 순간이었다.

## 3. 준법서약서와 양심의 자유

### (1) 양심수들이 느끼는 준법서약서

준법서약제도가 과연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양심수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최근 가족들이나 외부인사들에게 보내온 서한 중에서 준법서약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모아내었다.

① "면회시간 내내 그 놈의 서약서 문제로 갑론을박,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느라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빛나던 청춘 다 보내고 열 네해째 갇혀지내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줄 잘 알면서

23) 1992.2.15자 민가협, 불교인권위, 천주교인권위, 한교협인권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전국연합 인권위 등의 기자회견문 참조

24) 헌법재판소 92헌마 32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법무부의 의견서 p.7

도 '사람이 다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순 없다'고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지키기'를 통하여 세상의 자유를 넓히고 만인의 자유를 다져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싸우는 인권운동가로 자칭하는 사람인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서약서와 타협할 수 있겠어요. … 왜 제가 서약서를 안 쓰고 그냥 갇혀 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워내고 심사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절대적인 자유를 저더러 포기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갇혀있는 것이 제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sup>25)</sup>

② "전 요즘의 서약서 논쟁을 바라보며 고등학교 시절의 자율학습이란 걸 떠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라는 자율학습에 왜 그리 조건은 많았는지, 지정된 좌석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던 그 분위기하며… 허용보다는 제한과 한정의 논리들이 저를 꼭꼭 감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율학습이란 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안에 들어야지 가능했던 것이었지요. 자율은 '알아서'라는 것에 그 생명이 있지요. 조건있는 자율은 타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건 이미 타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에 아무리 자율의 가면을 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겠지요"<sup>26)</sup>

③ "엊그제는 전향제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통해 정치범을 석방하겠다는 기사와 그에 따른 논란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장기수들과 김성만, 강용주, 백태웅, 박노해, 황인욱 씨 등 저희들과 가까운 세대이고 고난의 길에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이 3.13 사면에서 제외되고 또다시 준법서약이라는 이름의 전향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서글픔 그리고 분노를 함께 느낍니다. 또 그들이 가족이 느낄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 정치적 신념과 지조는 어떠한 폭력과 회유로도 꺾을 수 없으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투쟁하는 청년들의 기개와 열정은 총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sup>27)</sup>

④ "이번 8.15 특사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장기수 선생님 17명이 있는데 준법서약서 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만 바꾼 전향서입니다. 역대 정권도 준법서약서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50년만에 정권교체 되었다고 하면서 서약서를 받고서야 석방하겠다는 발상이 군사정권보다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북쪽이 고향이 장기수들이 서약서를 쓰면 통일이 되어도 고향에 못가게 하는 고약한 술책입니다. 그래서 비인도적인 처사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sup>28)</sup>

25) 1998.7.15자 강용주의 편지 중에서

26) 1998.7.21자 이환영의 편지 중에서

27) 1998.7.3자 민경우의 편지 중에서

28) 1998.7.13자 장기수 리경찬 편지 중에서

이 언급들을 보면 대체로 현재 옥중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전향제도와 별다른 것이 없으며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2) 침묵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준법서약서가 특히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침묵의 자유란 “자기의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써 인정되는 자유이다. 헌법 제10조 제2항의 불리한 진술 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고문 등을 방지하여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침묵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중세 유럽 등지에서 있었던 이단 심문이라든가, 특히 정치체계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안에 포함되어 있는 침묵의 자유 침해이다.<sup>29)</sup> 그러므로 법질서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기재하여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질서를 침해하여 외부적인 행동으로 드러내 처벌받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서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

침묵의 자유는 물론 사실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적 지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sup>30)</sup> 증언의 거부나 취재원의 비익권이 실정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단순한 사실에 관한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정치상의 신념이나 세계관과 밀접하게 결부된 것일 때에는 침묵의 자유에 포함된다. 침묵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인 양심, 또는 정치적 신념, 세계관 등과 같은 사상 또는 양심 및 사상과 결부된 사실이다. 준법서약서는 단순한 사실이나 기술적 지식에 관한 기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 국가관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신념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명백히 양심의 자유 및 침묵의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에 속한다.

또한 준법서약서는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외적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양심의 추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현이다. 제2차 세계大战 당시의 십자가 밟기, 충성선서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sup>31)</sup>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양심의 결정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양심상의 결정은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양심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과거 없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적어도 그것이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 동의한다. 만약 내심의 양심조차 처벌이 가능하고 규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가공할 상황을 상상해 보라. 아마도 내심의 생각과 사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심사받고 수사받아야 하며 자신의 일기와 중얼거림마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이나 상호간의 의심과 밀고에 의해 공포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동물농장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임이 틀림없다.

29) 권영성, 헌법학원론(상), 법문사, 1979, p452

30) 이경호, 양심의 자유보장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1982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21

31) 권영성, 위의 책, p453

## (3) 준법서약서와 전향서의 동일성과 차별성

준법서약서와 전향서는 무엇이 다르고 같은가. 일부에서는 전향서는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것임에 비해 준법서약서는 단순히 법질서를 잘 지키겠다는 각서에 다름아니니 큰 진전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 두가지 서면의 차이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준법서약서는 전향서의 확대판이라는 점에서 그 남용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다.

첫째,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간에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전향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준법서약서는 그러한 사상의 전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존중하고 그 법질서를 지킬 것을 다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심의 의지와 신념을 표현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둘째, 실제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전향서라는 이름만으로 양심의 강제를 하지는 않았다. 각서, 생활계획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실상의 전향과 사상의 변경을 요구해 왔다.<sup>32)</sup> 준법서약서 역시 사실상의 전향과 다를 것이 없다. 그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신이 지지하든 하지 않든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신념을 피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향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한정해서 강요했던 것에 비하여 준법서약서는 모든 시국사범에 확장하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향서에 비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상이 훨씬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단체들이 전향제도의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넷째,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는 다같이 개인사에 대한 최소개입의 원칙, 상대적 다양성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는 서구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인 반면 개인의 사상과 신념까지 국가의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한국적 국가주의와 봉건적 관료주의의 소산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상에까지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실제는 독재옹호론으로 흐르고만 역사성을 지닌 이론인 것이다. 더구나 내심의 자유까지 침범하고 관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유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향제와 준법서약서는 끊임없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심사하고 국가가 동의하는 사상과 이념에 대한 다짐을 받아두어야만 안심하는 국가주의자들의 반민주주의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sup>33)</sup>

32) 예컨대, 장의균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얼마 후 3심이 끝나자 저에게도 전향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재심을 위해 전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들은 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전향서가 아니라 각서만 쓰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거부하자, 그러면 할 수 없다, 당신도 할 수 없이 15사(3,40년째 살고 있다는 북한 공작원들이 있다는 곳)에 가야겠다고 위협했습니다.”(1992.11.2자 장의균의 헌법소원이유소견서, p23)

33) 사실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의 공판과정 등에서 공안사건 피의자, 피고인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대해 질문받고 그 답변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 다음 질문과 답변사례를 보라. (서준식, 위의 책, pp37-39)

문: 용의자는 교도소 등에 재소 중 전향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 (4) 몇 가지 사례

##### 1) 미국의 매카시즘과 충성심사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냉전시대의 개막과 강화와 더불어 미국에서 횡행한 매카시즘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련의 시기였다. 대규모 '용공분자색출운동'이라고 할 만한 이 운동은 민주주의 위축과 인권의 침해, 다수의 희생자를 낳았다. 국내 치안분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상원의원 매카시의 입에서 거명되는 말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이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분자로 낙인찍혔다. 아시아문제의 권위였던 리치모어 교수, 보렌 전 소련대사, 하버드대학의 경제학 교수 스위지 등이 바로 그러한 희생자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반미활동, 파괴적 행동, 사회주의적 사고 등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와 배제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의 임용 또는 재직요건으로서 헌법 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선서시키거나 그들의 반국가성을 심사하여 임용을 거부하거나 공직을 박탈하는 이른바 충성심사가 미국에서 도입되어 논란이 일었다. 각 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연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심사가 보편화되었다. 심사의 기준이라는 것이 광범하고 애매하여 인권침해와 부적정판단의 가능성성이 높았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

- a. 사보타지, 간첩행위 또는 태업자, 간첩으로 믿어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자발적 지원의도를 가지고 친밀하고 동정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일
- b. 반역적 행동 또는 의견을 고무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역, 저작 또는 행동
- c. 미국정부의 현존하는 헌법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폭력에 의한 혁명의 주창
- d. 미국에 불충을 나타내는 사정하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의 문서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공개하는 일
- e.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여 다른 정부의 이익에 공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을 하거나 기도하는 일
- f. 외국이나 국내의 조직, 협회, 운동, 그룹 회원이 되거나 관계를 가지는 일

이러한 충성심사제도가 합헌이라는 견해가 없지 않았으나 그 후 국가의 충성심사를 위헌이라고 본 판례들에 의해 전복되었으며 더글라스 대법원 판사는 이러한 충성심사에 대해 법의 정당한 절차가 아니며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는 노조의 간부에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선서진술서를 제출케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이었다.

문: 전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국가체제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

문: 용의자는 대한민국에 충성할 의사가 없는가요

답: 대한민국의 현정권에 대해서는 충성할 의사가 없습니다

문: 그러면 어떤 정권에 충성을 하겠는가요  
...

##### 2)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와 국기경례거부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가 큰 쟁점으로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이 여호와의 종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심적 결정에 따른 집총거부, 군복무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서구 여러나라에서 이를 합법화하려는 노력과 운동이 이루어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쟁반대입영거부와 베트남전쟁 참전거부운동은 특히 유명하다. 1960년대 이후 양심과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서독기본법은 "누구도 그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제4조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반군사훈련 및 병역법 제6조3항 역시 종교상의 교육이나 신념에 의한 경우 병역거부를 인정해 왔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의해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신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구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하에서 이러한 병역거부자허용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미국 판례는 당초 "정치 사회의 당면관념에 반하는 종교적 신조를 가졌다"는 사실이 곧 그 시민을 정치적 의무로부터 면제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기경례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1943년에 이르러 Barnette 사건에서 "원고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절하는 것은 다른 개인들과 권리의 충돌을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를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동은 평화로우며 질서가 있어 법적 정당성을 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공공질서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면 개인의 양심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하여 국기경례를 거부하는 자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리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는 사실상 양심의 자유의 실현과정에서 생겨난 쟁점들이다. 그러나 준법서약서 문제는 양심의 외부적 실현과정이 아니라 양심의 내면문제에 불과하다. 그러한 내면의 양심을 굳이 밖으로 드러내 일정한 의사를 표현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4. 결론

##### 큰 길을 두고 '개구멍'으로 나올 수는 없다

전향제도이든 준법서약제도이든 그것은 인간내면의 자유에 대한 침탈행위이다. 인간의 내면세계까지 침탈하여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려는 사고방식은 왕조시대와 독재시대의 유물이다. 냉전이 끝나고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러한 유물이 다른 형태로 살아 남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가 들꽃처럼 피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언명해 왔다. 많은 인권정책이 공약으로 담겨졌으며 자신의 험난한 정치적 역정과 함께 평가받아 국제적 인권상까지 수상하였다. 김대통령이 수많은 세월을 인고끝에서도 그 한 장의 종이조각에 서명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되지 못한 채 수십년의 세월을 살아온 장기수와 양심수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인권정책은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없게 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김대통령과 박장관의 이번 준법서약서 방침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많은 양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을 달래는 방편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와 총정이 담겨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인권의 온전한 복원에는 절충이 있을 수 없다. 보수세력을 의식하여 과거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승계한 준법서약서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양심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반민주주의인사들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복원을 늦출 수는 없다. 어느 양심수가 지적한 것처럼 큰 길을 두고 구태여 개구멍을 통해 나오라는 요구를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보안관찰법에 대해

### 1.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우리 나라에 있는 사상탄압법과 제도로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그리고 보안관찰법이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제적인 기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로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면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쓸 것을 강요당하며 석방된 후 사회에 나와서는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98년 한 해 동안 석방된 양심수는 164명이다. 이들은 전부 보안관찰대상자가 되고 이중 몇 명은 보안관찰피처분자(=피보안관찰자, 경찰이 요주의 인물로 판단하면)로 구분되었을 것이다.

현재 정확한 보안관찰대상자의 수나 피처분자의 수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안관찰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4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야당의원에게 구두보고한 것에 의하면 대상자는 3천명, 피처분자는 700명 정도라고 했다. 정부의 보고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최근에는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98년 6월 18일 장민성(사노맹 사건, 91년 구속, 96년 1월 출소)씨가 낸 소송에 재판부는 “재벌의 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편에선 출소 이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행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98년 한해동안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함세환/98.1.22/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집회 참석 이유

방양균/98.1.23/20만원 벌금형/신고불이행

홍중희/98.2.20/100만원 벌금형/신고불이행

김삼석·이혜정/98.11.13/신고거부 이유 경찰서 연행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에서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98년 6월 27일 보안관찰법 설명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폐지운동을 시작했다. 지역에서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인권운동젊은연대가 전북지역 보안관찰대상자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 2.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 (1) 보안관찰법 적용대상

①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형법 88조), 동 미수죄(89조), 동 예비음모죄(90조), 외환유치(92조), 여적(93조), 모병이적(94조), 시설제공 이적(95조), 시설파괴 이적(96조), 물건제공 이적(97조), 간첩(98조) 및

이러한 범죄들의 미수(100조)와 그 예비음모(101조)

- ② 군형법상의 반란죄(군형법 5조) 및 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죄(6조)와 양범죄의 미수(7조) 및 예비음모(8조), 이적목적 반란불보고죄(9조 2항),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용시설 등 파괴, 간첩, 일반적 및 동 범죄의 미수·예비·음모(11조 내지 16조)
- ③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죄(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죄(5조), 편의제공 중 무기제공죄(9조 1항 및 3항)
- ④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구형법,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1948년 제정 이후 현행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구 국가보안법, 구 반공법, 구 국방경비법, 구 해안경비법의 상기 1-3호에 상응하는 범죄

위의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이다(법 제3조).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보안관찰법의 목적은 동법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끈질긴 추적과 통제에 있다. 더욱이 그 적용대상이 과거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보안감호에 비해 좀더 넓은 감옥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내처우'이기는 하지만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그 사상의 전향 여부를 불문하고 평생동안 예외없이 창살없는 감옥을 제공하고 있는 법이다.

## (2)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보안관찰처분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4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7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12조),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14조). 보안관찰처분이 면제될 수 있으려면, 제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준법정신이 확립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그리고 검사 또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면제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준법정신의 확립이라는 말은 소위 반성문 내지 전향서의 제출을 근거로 삼고 있다.

## (3) 보안관찰의 내용

보안관찰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시와 통제의 체계는 한치의 틈도 없는 치밀한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모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경찰의 감시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되면 인적 사항,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전의 직업,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및 가입단체, 병역관계, 출소예정일,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에 관한 상세한 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와 관계서류는 대상자가 어디를 가든지 신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송부된다. 그리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항상 동태파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가 작성되고 동태파악에서 소정의 변동사항이 기록되고 검사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이 관리부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

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 대한 영구적인 감시제도는 보안관찰법에서는 어느 조항에서도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밀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둘째,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상 관할경찰서의 동태관찰의 대상이 되며, 앞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다시 또 '보안관찰부'에 등재되며 이 보안관찰부에는 1개월마다 기재사항의 변동이 기록되어 준영구적으로 보관된다. 피보안관찰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고 3개월마다 그 변동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주요 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및 장소와 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기타 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

셋째, 보안관찰법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일정한 '지도'와 조치를 할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주고 있다. 그런데 지도의 내용을 보면 피보안관찰자의 긴밀한 접촉으로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지도라는 미명하에 항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이다.

넷째, 보안관찰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주거 또는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환경 개선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보안관찰법은 동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일정한 감시의 체계를 벗어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형벌로써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은신 또는 도주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내지 피보안관찰자가 일정한 신고의무 기타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안관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보안관찰에 관한 일체의 통제자료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에 관한 제반 기록을 영구 내지 준영구로 보존하도록 하고 이는 결국 일단 한 번 보안관찰대상자가 되기만 하면 본인의 생존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사상범의 후예라는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이다.

## (4)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이와 같은 보안관찰법은 다음과 같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① 보안관찰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법이다.

② 보안관찰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③ 죄형법정주의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④ 사생활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보안관찰법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안관찰법의 본질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다. 사상범에게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배권력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지배권력에 위험한 사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보안관찰법은 공안사법이라는 '희생양'을 불모로 하여 국민 일반의 권리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는 '권력의 경제책'이다. '공안사법'과 '공안기관' 그리고 '공안관계법'이라는 3자는 한국사회의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베풀목 역할을 해 왔다. 공안기관은 공안관계법으로 공안사법을 만들어내면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권력의 정당성의 위기를 돌파해왔다.

보안관찰법은 공안기관이 공안사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의 임무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진보와 희망을 압살하는 것이다.

### 양심수란 무엇인가?

양심수는 원래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의 규약에서 나온 말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양심수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함이 없이 정치적, 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의 표현을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투옥, 구금, 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때 그 폭력성의 유무는 정부의 발표나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양심수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법률의 실질적인 입법 목적이나 법률집행의도가 국제인권규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때 그 법을 어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거나 행취하기 위해 행동한 결과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위시에는 양심수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았거나 행동한 결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모두 양심수라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 목적에서, 제정 절차에서, 그리고 법률적 내용에 있어 국제인권규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분명 양심수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구속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노점상 등도 양심수이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양심수들이다. 설령 객관적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양심수인 것이다.